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7)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25. 9.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7)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25. 9.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김평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이경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황선주 한양대학교 조교수

2025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이 영

요 약

1. 도입 배경 및 제도 개요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는 공익적 성격을 지닌 조합법인들의 납세 부담, 기장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 1965년부터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세율 10%)로 운영되었던 제도가 당기순이익 기준 과세로 변경(1998. 12. 28.)되고, 이후 일부 항목의 세무조정이 추가(2000. 12. 29.; 2013. 1. 1.)되는 등 변화를 거쳐 현 제도로 발전
 - 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들의 복리 증진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혜대상으로 설정됨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는 2단계 조정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감경하는 구조를 갖고 있음
 - 동 특례는 조합법인 등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결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9개 항목만 세무조정 후 과세표준 도출
 - 법인세액은 (법인세차감 전 당기순이익+수익사업 관련 기부금·접대비 손금 불산입액 등 9개 항목 세무조정) × (9%, 12%)로 설정
 - 세무조정 항목은 기부금, 접대비, 과다경비, 업무무관경비, 지급이자, 대손금,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포함
 - 과세표준 20억원 이하는 9%, 초과분은 12% 세율 적용
 - 일반 법인의 법인세율 체계는 과세표준 2억원/20억원/200억원/3천억원을 기준으로 9%/19%/21%/24%로 구성되므로 동 특례는 조합법인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세지출 발생
 - 적용 대상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영업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총 여덟 개

- ① 세무조정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 조정 관련 회계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②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세지출 감면 규모는 최근 3년간 의무심층평가 기준인 300억원을 초과하여 심층평가 필요성 발생

<표 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의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망)	2025 (전망)
규모	1,616	2,360	2,451	2,964	3,636	3,271	3,394	3,693	5,113	3,289	3,444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타당성 분석

- 현재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구조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 외부의 이용자에게도 혜택이 분산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정책 수혜 대상의 불일치라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 조합원과 실질적 서비스 이용자 간의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으며, 비조합원 또한 조합의 수익에 기여하고 세제 혜택의 간접 수혜자가 되는 현상은 애초에 조세특례의 목적이 조합원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에 있다는 점과 괴리가 발생함
- 조합법인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과 세제 감면 사이의 정합성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협동조합은 공익법인과 달리 전체 사회에 대한 공익 실현보다는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증진을 일차적 목표로 하고 있음
 - 과세특례의 정책 정당성은 조합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의 수준과 조세지출 규모 간의 균형 속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현행처럼 광범위한 세제지원을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구조는 그 설득력이 약화될 수 있음

- 당기순이익과세 방식이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최적의 지원수단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 현행 제도는 조합의 당기순이익 전체에 대해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로 조합원 이용 실적이나 조합 내 자금 운용 방식과 무관하게 세제 혜택이 제공되지만, 해외 주요국은 조합원 거래 실적에 따른 배당(이용고배당)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경우에만 조세 감면이 발생
 - 결과적으로 조세지원이 조합원 개인에게까지 귀속되지 않고 조합 자체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며 조세지출의 목표와 수단 간의 정합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제도의 간소성과 효율성을 기대했던 당기순이익과세 체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복잡해지고 있으며,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
 - 1998년 도입 당시에는 세무조정 항목이 최소화되었으나 과세형평을 이유로 점차 항목이 확대되었음
 - 한편 일반 법인과 다른 과세방식(세무조정 생략)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결손금 및 기부금 공제 제한 문제가 지적됨
 - 미국·캐나다·일본 등은 조합원 실적에 기반한 배당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수혜자인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
 - 이에 반해 한국은 전체 순이익에 대해 저율로 과세하는 간접적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어 조합법인 세제 지원 체계가 실질 수혜자인 조합원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점을 시사

- 현행 조합법인 과세특례는 조합의 규모에 따라 혜택의 크기가 달라지는 구조적 특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규모가 큰 조합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누리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구조는 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소 괴리가 있을 수 있어, 정책적 정당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조합법인 과세특례는 즉시 폐지보다는 일정 조건을 전제로 신중하게 연장을 검토하되,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는 그동안 일정한 정책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일부 제도적 한계와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제도를 즉시 폐지하기보다는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신중하게 연장을 검토하면서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구체적으로는 특례 연장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방향의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세율 구조 개선: 현행 단일세율 방식에서 벗어나 조합의 이익 규모에 따라 세율을 더욱 차등 적용하는 누진 구조를 도입하여, 소규모 조합에는 현행 세율 유지, 대형 조합에는 상향된 세율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음
 - 공익성 요건 부여: 조합의 세제 혜택이 조합원 및 지역사회로 실질적으로 환원 되도록, 일정 수준의 공익활동 실적을 특례 적용의 요건으로 설정
 - 대형 조합 특례 축소: 일정 자산 또는 이익 규모를 초과하는 대형 조합에 대해 특례 적용을 제한하거나 감면 폭을 축소함으로써 역진적 구조를 완화
 - 회계분리 및 투명성 제고: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간 회계 구분을 명확히 하고, 사업별 손익 계산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과세대상 소득의 투명성을 제고
 - 이러한 개선 방향은 조합법인의 공익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의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특례의 지속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또한 향후 제도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개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조세특례의 현행 유지만으로는 제도의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전제된 한시적 연장 및 제도 종료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한 정책 대응이 필요함
 - 따라서 향후 다음과 같은 방향의 시나리오를 검토해 볼 수 있음
 - 제도 개선을 전제로 한 한시적 연장
 - 개선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 종료
 - 이러한 방식은 협동조합의 고유 기능과 공익적 역할을 존중하면서도, 조세특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3. 효과성 분석

- 동 제도는 일반 영리법인과는 다른 조직 목적을 가진 조합법인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기능 수행을 촉진하고자 도입되었으며, 이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 제도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함
 - 본 실증분석은 이러한 제도 변화가 조합법인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함
 - 제도 개편 이후에도 조합법인의 성과가 유지되거나 개선되었다면, 해당 조세 특례는 지속가능성과 정책효과 측면에서 유의미한 제도로 평가 가능
 - 반대로 조합법인이 과세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수익 축소 등의 반응을 보였다면, 이는 조세특례가 왜곡된 유인을 제공했음을 의미할 수 있음
 - 이 경우 조세특례에 따른 성과 향상은 편익, 세 부담 증가 또는 행태 왜곡은 비용으로 간주 가능
 - 조합법인은 민간 부문 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으며,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운영 안정성과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정책적 목적임
 - 다만 행정자료를 통해 조합법인의 복리 증진을 측정하는 변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합법인의 성장성(수입) 및 수익성(당기순이익) 변수를 결과변수로 활용

- 조합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하므로 결산조정 및 세무조정을 거쳐 법인세 과표 및 세액계산이 이루어지나 「법인세법」상의 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행정 자료 구축)
 - 2015년 신고법인 기준으로 수혜기업 전수자료 추출
 - 분석 대상은 2015년 신고된 조세특례 수혜 조합법인 전수

- 실증분석 방법 소개
 - 과세표준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12%의 세율이 새롭게 적용된 제도 개편을 Sharp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RDD)으로 식별
 - 본 제도의 구조적 특징인 20억원 과세표준 기준의 누진세율 도입은 임계값 기반의 불연속적 세율 변화를 유발

1) 「법인세법」 제97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 이에 따라 조합법인들 사이에서 과세표준(tax base)을 기준으로 세 부담이 급격히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과세표준 20억원 전후의 법인들 간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할 수 있게 해줌
- 따라서 다음과 같이 2015년 조합법인 중 과세표준을 러닝 변수(running variable)로 하고 20억원을 임계값으로 설정한 단면 회귀불연속분석 설계

$$Y_i = \alpha + \tau \cdot 1[\text{TaxBase}_i > 20] + f(\text{TaxBase}_i - 20) + \varepsilon_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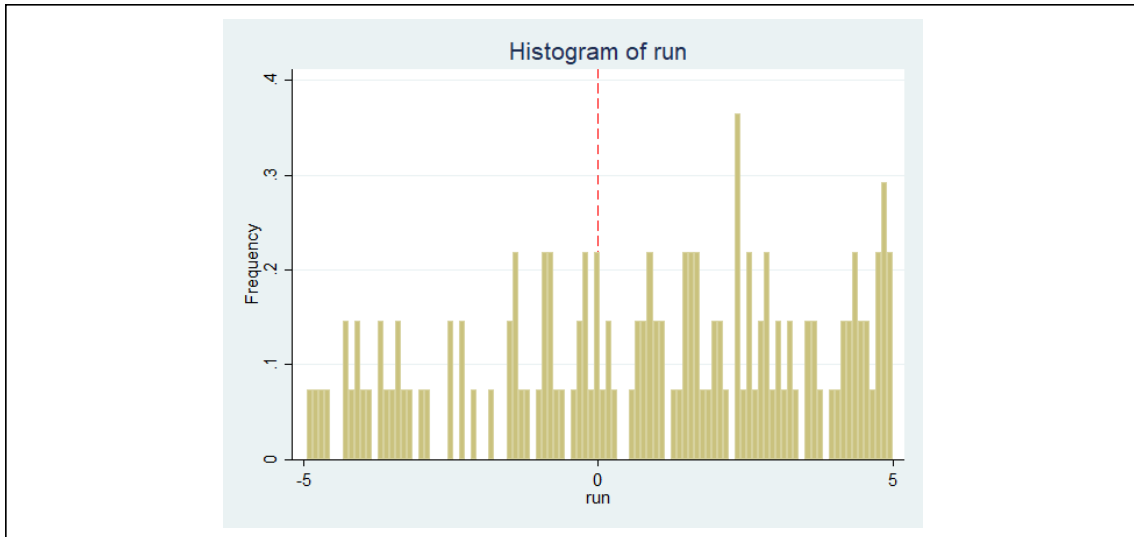
- $1[\text{TaxBase}_i > 20]$: 과세표준이 20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 $f(\text{TaxBase}_i - 20)$: 과세표준에 대한 이차 다항식 함수
 - τ : 단절효과(treatment effect at cutoff), 즉 세율 상향조정의 경계효과
 - 주요 종속 변수로는 수입금액과 당기순이익이 포함되어 있으며, 분석을 위해 각각 로그 변환하여 사용
 - 또한 산업분류와 지역(소재지) 정보를 이용해 회귀분석 시 업종 및 지역 더미변수로 활용
- 실증분석에서는 5억원을 대역폭(bandwidth)으로 선택하고 양측 추정(robust) 기법을 적용해 신뢰도 높은 추정을 수행하며, 그래프를 통해 경계 근처의 데이터 분포 및 평균값의 불연속성을 시각적으로 확인

□ RDD 모형 추정 결과 법인세율 인상은 조합법인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일부 악영향을 주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RDD 모형을 사용하는 기본 가정은 잘 충족되어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 절단점 근처에 충분한 관측치가 있어야 RDD 추정의 신뢰도가 높는데, 그래프에선 '0' 주변에도 고르게 관측치가 분포하고 있음
 - 만약 절단점을 중심으로 러닝 변수 값이 급격히 변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분포하면 치팅(manipulation)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으나, 이 그래프는 비교적 균등한 분포를 보임
 - 예를 들어 조합법인들이 세율 구간을 회피하기 위해 과세표준을 인위적으로 조정했다면 20억원 직전 구간에 기업이 몰리는 분포 왜곡이 나타날 수 있음

- 이 외에도 McCrary 밀도 검정과 커널 밀도 함수 그래프를 통해 이를 확인한 결과 임계점 전후의 과세표준 분포에 유의한 불연속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RDD 분석의 전제가 충족됨을 시사(p-value > 0.3 수준)

[그림 1] running variable 히스토그램



자료: 저자 작성

- RDD 추정 주요 결과는 <표 2>에 존재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한 해석은 RDD 그래프와 함께 설명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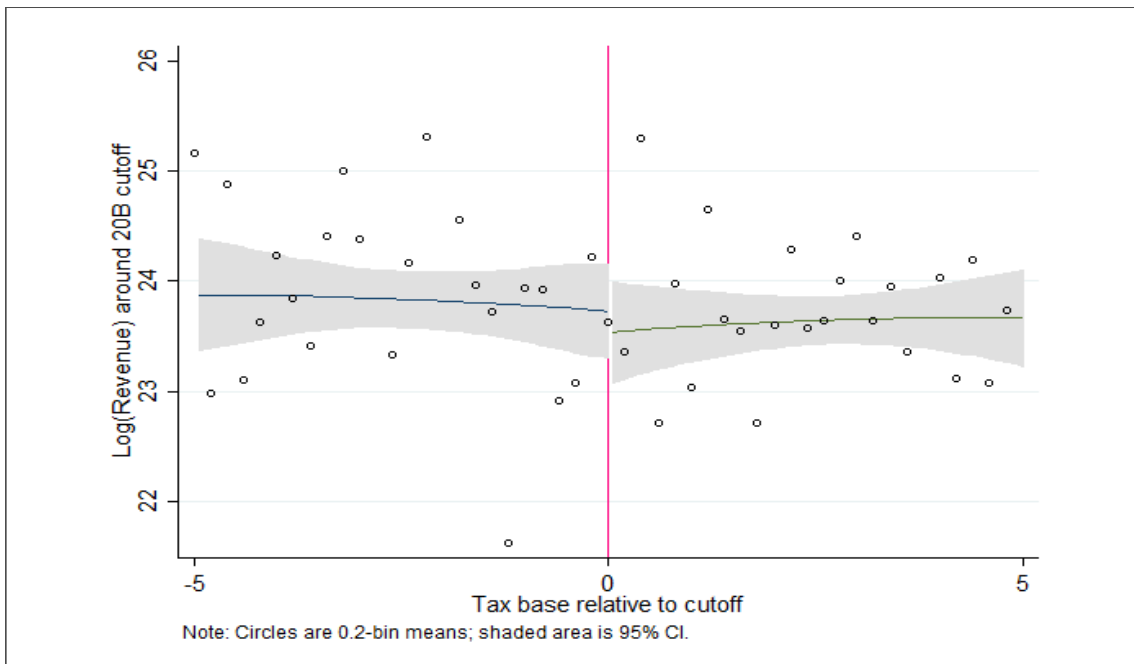
<표 2> RDD 추정 결과

종속 변수	로그(수입금액)	로그(순이익)
추정 계수	-0.151	-0.023
표준오차(Robust)	(0.222)	(0.059)
유의확률(p-value)	0.496	0.701
95% 신뢰구간	[-0.587, 0.284]	[-0.137, 0.092]
밴드위스(h)	0.5	0.5
다항식 차수(p)	2	2
관측치 수	3,668	3,668
통제변수	업종 더미(9개), 지역 더미(17개) 포함	

자료: 저자 작성

- 과세표준이 20억원을 초과하여 법인세율이 9%에서 12%로 증가한 경우 기업의 수입금액이 약 14.0% 감소하나, p값은 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파란 선은 과세표준이 임계점 이하(20억원 미만)인 구간의 밀도, 빨간 선은 임계점 이상 구간의 밀도를 나타냄
 - Log(수입금액)에 대한 분석 결과 임계값을 기준으로 한 처리효과는 -0.151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p=0.496)
 - 이는 과세표준이 20억원을 초과한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음(-)의 방향으로 수입금액이 감소하였지만, 95% 신뢰구간이 [-0.586, 0.284]로 넓어 처리효과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움

[그림 2] RDD 추정 결과(종속변수: Log(수입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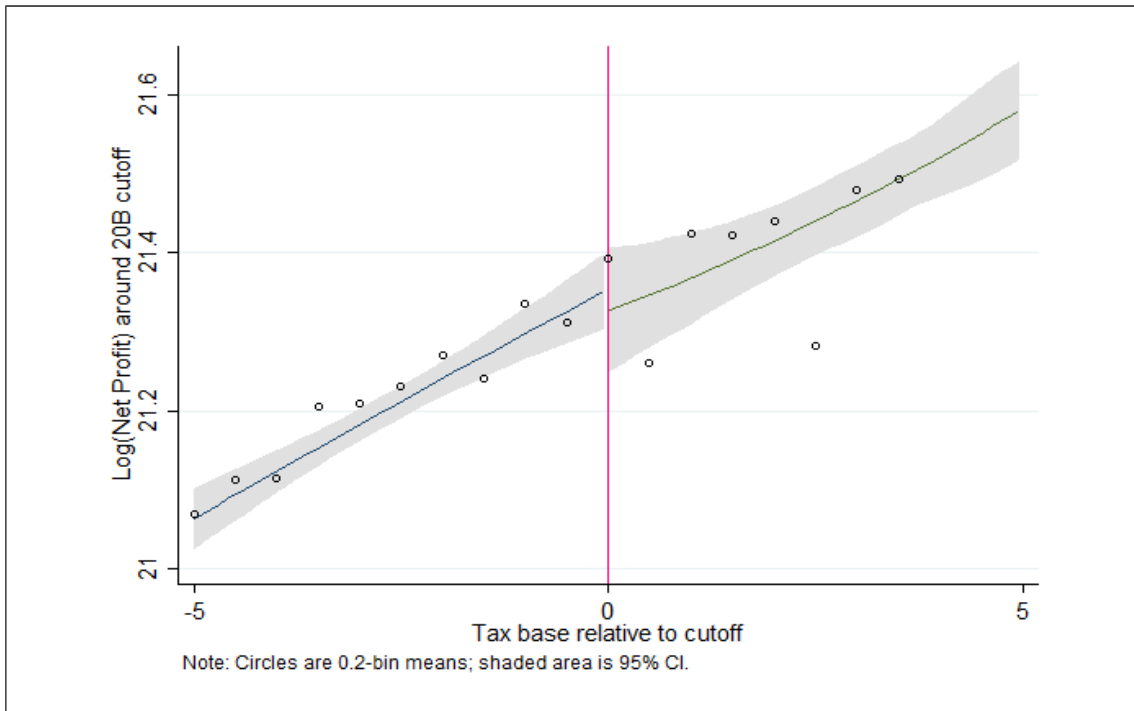
주: 대역폭은 5억원이며, 삼각형 커널 가중치를 적용하였고, 음영 표시는 95% 신뢰구간을 의미함. 점들은 데이터를 구간별(bin) 평균한 값이며, 실선은 임계점 좌우 각각에 적합된 국지적 2차 회귀 추세선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 역시 과세표준이 20억원을 초과한 경우 당기순이익은 2.2% 감소하였으나, p-value 역시 0.6 이상으로 통계적 유의성은 낮음
 - 파란 선은 과세표준이 임계점 이하(20억원 미만)인 구간의 밀도, 빨간 선은 임계점 이상 구간의 밀도를 나타냄

- Log(순이익)에 대한 분석 결과, 임계값을 기준으로 한 처리효과는 -0.022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p=0.701$)
- 이는 과세표준이 20억원을 초과한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음(-)의 방향으로 순이익금액이 감소하였지만, 95% 신뢰구간이 $[-0.137, 0.092]$ 로 넓어 처리효과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움

[그림 3] RDD 추정 결과(종속변수: Log(순이익))



주: 대역폭은 5억원이며, 삼각형 커널 가중치를 적용하였고, 음영 표시는 95% 신뢰구간을 의미함. 점들은 데이터를 구간별(bin) 평균한 값이며, 실선은 임계점 좌우 각각에 적합된 국지적 2차 회귀 추세선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 이러한 결과는 세율 인상이 존재하더라도 조합법인의 수입 및 순이익 수준에 당장의 비연속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조세부담 변화가 단기적인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보여줌
- 전반적으로 20억원 임계점을 전후한 기업들의 재무성과 지표에서 뚜렷한 단절적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고, 95% 신뢰구간 역시 효과의 존재 여부에 대해 영(0)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를 보여줌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조합법인에 대한 현행 과세특례는 농어민·서민 지원 수단으로 일정한 기능을 해왔지만, 공익성과 효율성의 한계를 고려할 때 조건부·한시적 연장이 바람직함
 -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은 공익 목적을 전제로 하나, 실제 조합원의 실익 증가나 공익 기여로의 연결 고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 세제 혜택 용도에 대한 통제 수단이 미비하고, 조합원에게 배당해야 하는 유인 체계가 없어 정책효과가 조합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한계 존재
 - 조세특례 혜택을 줄여도 조합법인의 매출지표는 크게 악화하지 않으면서도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됨
 - 효과성 분석에서 보듯 일정 과세표준 이상의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해 법인 세율을 높여도 세수저항이 크지 않았으며, 수익성 및 성장성의 하락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 본 제도를 일시적으로 일몰 연장한 이후 조합법인의 주요 재무지표를 면밀하게 관찰 후 향후 여건 개선 시 점진적 폐지 추진 제안

- 제도 개선 방향으로는 일반 법인과 유사한 과세표준 산정 방식 도입, 이익 규모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 환원·사회공헌 의무화,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업별 회계분리 등이 있음
 - 현행 세무조정사항 아홉 개 이외 익금 산입 및 손금 불산입 항목 위주로 세무 조정사항 추가 가능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19조의2),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0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3조) 등 추가 가능한 손금불산입이 존재함
 - 다만 추가 세무조정에 따라 과세표준이 높아질 위험이 있어 조합법인이 기 피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법인세법」 개정 시 이중으로 다른 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금액 익금산입, 기한 내 증빙 미제출 시 감면액 손금불산입 등 보다 특례에 맞는 형태(즉 공익 활동에 대한 사후 관리 요건)를 추가할 수 있겠으나, 이는 현실적 검토 필요

- 조합법인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과세하되 공익목적 사업의 경우 회계 분리하거나 준비금을 설정하는 방안도 가능
 -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회계상 별도로 분리하여 결산 및 신고하고,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시키는 것은 가능
 - 예를 들어 교육, 복지, 농어촌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은 공익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특례의 본래 목적에 더 부합할 것으로 판단함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법인세법」상 과세 소득에 대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당 금액을 비용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해 줌
 - 다만 이는 공익 목적이 아니므로 공익 목적으로 한정한 준비금을 설정할 경우 해당 준비금 손금 산입을 통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형태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도 가능

목 차

I. 서론	19
II.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운영 현황	25
1. 조합법인 등의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27
2. 운영 현황	33
3. 외국의 조합법인 등 조세지원제도	51
가. 미국	51
나. 일본	53
다. 프랑스	55
라. 독일	56
마. 영국	58
바. 스페인	60
4. 다른 유형의 법인 조세특례와의 비교	82
가. 공익법인과외 조세지원 차별성 유무	82
나. 중소기업 지원제도와외 연관성 등	83
III. 타당성 분석	87
1. 조합법인 과세특례제도 도입 배경 및 개요	89
2. 선행연구 검토	92
3. 정부 개입의 타당성	94
4. 지원 수단외 타당성	97
5. 지원 내용과 방식외 적절성	102
6. 다른 조합법인 지원제도와외 중복성	107
7. 정리 및 제언	109

IV. 효과성 분석	111
1. 서론	113
2. 자료 및 식별전략	114
3. 결과	118
V. 결론 및 정책 제언	123
1. 분석 결과의 요약	125
2. 정책 제언	126
참고문헌	129

표 목 차

<표 I-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의 조세지출 규모	22
<표 II-1> 법인세 세율 비교	28
<표 II-2>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당기순이익과세 방식	28
<표 II-3> 법인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29
<표 II-4>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연혁	32
<표 II-5>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의 조세지출 규모	33
<표 II-6> 과세특례 적용 조합법인 수	34
<표 II-7>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분포	37
<표 II-8>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과세표준 구간별 분포	39
<표 II-9>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평균 수입금액	42
<표 II-10>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과세표준 구간별 평균 수입금액	44
<표 II-11> 과세특례 조합법인 중 결손법인 수와 비중	46
<표 II-12>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평균 당기순이익	48
<표 II-13>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과세표준 구간별 평균 당기순손익	49
<표 II-14>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평균 실효세율(2023년 기준)	51
<표 II-15> 일본의 법인 유형별 세율 현황	53
<표 II-16> OECD 회원국들의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비교	63
<표 II-17>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에 적용되는 지원제도	83
<표 III-1> 조합법인별 설립 취지와 사업 내용	90
<표 III-2> 각 조합의 공익적 기능 및 활동	95
<표 III-3> 조합법인과 공익법인의 과세 구조 및 관련 제도 비교	97
<표 III-4> 주요국 협동조합 과세체계 비교	101
<표 III-5> 비교대상 법인과의 세제혜택 비교	104
<표 III-6> 다른 재정사업과의 중복성 평가	108

<표 IV-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조합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 제출 서류	115
<표 IV-2> RDD 추정 결과	119

그림 목 차

[그림 II-1] 독일 협동조합 조직체계	57
[그림 II-2] 스페인 협동조합의 법인세 정산 흐름도	62
[그림 IV-1] 당기순이익과세특례 적용 법인에 대한 신고안내	115
[그림 IV-2] running variable 히스토그램	118
[그림 IV-3] RDD 추정 결과(종속변수: Log(수입금액))	119
[그림 IV-4] RDD 추정 결과(종속변수: Log(순이익))	120

I. 서론



I. 서론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조합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동 제도는 1965년부터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세율 10%)로 운영되었던 제도가 당기순이익 기준 과세로 변경(1998. 12. 28.)되고 이후 일부 항목의 세무조정 추가(2000. 12. 29., 2013. 1. 1.) 등 제도 변화를 거쳐 현 제도로 발전
 - 조합법인은 일반 영리법인과 달리 조합원들의 복리 증진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 등 공익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과세특례의 대상 법인으로 수혜대상이 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합법인의 납세협력비용과 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영 효율성이 낮은 조합법인의 운영 안정성과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 조합법인은 영리법인에 비해 조직화 수준이 낮고 규모가 영세한 경우가 많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 차이에 따른 복잡한 세무조정 과정이 조합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존재함
 - 이에 따라 동 특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법인에 대해 결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접대비 등 일부 항목만을 조정한 간소화된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복잡한 세무처리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함

- 구체적으로 조합법인 등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법인의 결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등 9개 항목의 세무조정 후 과세표준을 도출
 - 법인세액은 (법인세차감 전 당기순이익+수익사업 관련 기부금·접대비 손금불산입액 등 9개 항목 세무조정) × (9%, 12%)
 - 세무조정 항목은 기부금, 접대비, 과다경비, 업무무관경비, 지급이자, 대손금,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 과세표준 20억원 이하는 9%, 초과분은 12% 세율을 설정하여 일반 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의 법인세율 적용
 - 일반법인의 법인세율 체계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3천억원 초과를 기준으로 9%/19%/21%/24%로 구성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은 8개 유형으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수산업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으로 구성
 - 유형별로 금융사업 관련으로는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농수산임업 관련으로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엽연초조합이 포함
 - 일반 생산활동 단체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있으며 소비자 단체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존재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의해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따른 의무심층평가 대상
 - 조세지출 감면 규모는 최근 3년간 평균 연간 3,949억원 기록하여 의무심층평가 기준인 300억원을 초과

<표 1-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의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망)
인지세 면제액	2,360	2,451	2,964	3,636	3,271	3,394	3,693	5,113	3,289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본 연구는 조세특례의 타당성 및 효과성 평가 등을 바탕으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의 운영 필요성 및 과정의 적절성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포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먼저 제도 현황 및 유사한 해외사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
 - 타당성 분석에서는 본 제도의 정책 목적을 바탕으로 정부 역할의 적절성, 지원 대상의 적절성, 지원 내용과 방식의 타당성, 제도 간 유사·중복 여부 등을 분석하고자 함
 - 조세특례가 조합법인의 운영 안정성에는 일정 부분 기여하였으나, 조합원의 실질적 편익 증대 또는 사회적 환류와의 직접적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 존재
 - 이에 단순한 세제 감면 방식에서 벗어나 공익성과 사회적 기여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감면을 제공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됨
 - 특히 향후 제도의 지속적 적용 여부에 있어서는 조합법인의 조직 규모, 회계 투명성, 공익 환원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 적용 축소, 차등 세율 도입,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과 연계된 제언 실시
 - 효과성 분석에서는 본 제도의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제도가 지원 대상인 조합법인의 경영성과에 미친 효과를 회귀단절법(RDD)을 이용하여 분석
-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토대로 조세특례제도의 정책 성과를 다각도로 평가하고, 향후 제도의 운영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수행하고자 함
- 제도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효율성, 형평성 저해, 제도 운영상의 한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함
 - 장기적으로는 제도 지속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역기능 및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자 함
 - 예컨대 대형 조합으로의 혜택 집중, 공익성과 무관한 수혜 확대 등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조합 중심의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조합의 공익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춤

Ⅱ.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운영 현황



II.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운영 현황

1. 조합법인 등의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는 공익적 성격을 지닌 조합법인들의 납세 부담, 기장 부담 등을 완화하여 공익적 활동을 지속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조합법인의 공익적 성격과 농어촌 및 지역사회 자조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상 우대를 부여하여 조합원 복지 증진을 도모

- 법인세 과세특례 지원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에 여덟 가지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포함)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포함)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조합법인은 동 제도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음
 -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아홉 가지 항목을 조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이용함으로써 복잡한 세무조정 과정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납세행정 부담을 완화
 - 일반 법인 대비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을 경감
 - 일반 법인의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9%, 2억~200억원인 경우 19%, 200억~3천억원인 경우 21%, 3천억원 초과 시 24%인 반면, 조합법인은 20억원 이하인 경우 9%, 20억원 초과인 경우 12%로 상대적으로 낮음

<표 II -1> 법인세 세율 비교

(단위: %, 만원)

법인 종류	소득 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비영리법인	2억원 이하		9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42,000
	3,000억원 초과		24	942,000
조합법인 (「조특법」 §72 적용)	20억원 이하		9	-
	20억원 초과		12	6,000

자료: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72&cntntsId=7746>, 검색일자: 2025. 5. 7.

- 조합법인의 법인세액 산정 방식은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에 열거된 각종 손금불산입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9%(20억원 초과 시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함

<표 II -2>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당기순이익과세 방식

조합법인 등의 법인세액 =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차감 전 당기순이익) + 수익사업 관련 기부금 및 기업업무추진비 등 손금불산입액] × 9% ¹⁾²⁾

주: 1) 과세표준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2%의 세율 적용
 2) 2016. 12. 31. 이전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다음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12%의 세율 적용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내용 정리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기부금 및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위임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열거된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및 제34조 제2항에 명시된 손금불산입액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금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 규정되지 않은 기부금,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경우 각 손금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4조)

-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은 다음 산식을 따름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 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과 제3항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50퍼센트

자료: 「법인세법」 제24조

-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은 다음 산식을 따름

[기준소득금액 -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자료: 「법인세법」 제24조

-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지출증빙을 갖춘 일정 한도 이내의 접대비만 손금산입(「법인세법」 제25조)
- 접대비 손금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한 금액으로,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불산입

<표 II -3> 법인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구분	수입금액	적용률
기본한도	-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 사업월수 / 12
수입금액별 한도	100억원 이하	0.3%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3,000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
	500억원 초과	11,000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

주: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기본한도의 50% 적용

자료: 이환웅·강동익(2022), p. 25.

-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교육·훈련비, 공동경비 등은 손비 산입하되, 해당 비용 중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6조)

-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의 취득·관리하는 비용, 그 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은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7조)
-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만 손금산입(「법인세법」 제27조의2)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규정 이외 건설자금 차입금 이자 등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급 이자를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에서 규정된 해당 사업연도 총급여액의 5%를 퇴직 급여 총당금의 누적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법인세법」 제33조)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에 대해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 다만 조합법인 중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에 대하여는 다음의 각종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 제5조의2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법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8조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법 제8조의2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법 제8조의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법 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법 제12조의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2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법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법 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이하 계속)
--

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법 제28조의3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법 제29조의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29조와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30조의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4항부터 제6항
 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4항
 법 제33조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법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법 제67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법 제99조의9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법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법 제104조의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당기순이익과세” 포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함(『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단서)

□ 동 제도는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에서 시작되어 1998년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로 발전함

○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전부개정을 통해 공공법인은 일반적인 법인세 과세 체계로 편입되고, 조합법인은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게 됨

- 『조세특례제한법』은 1965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정으로 출발하여 이후 95차례의 개정을 거쳐 한시법 적용시한이 만료되자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개정²⁾

2) 윤충식·장태희, 『조세특례제한법 해설과 실무』, 삼일인포마인, 200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moleg.or.kr>, 2008. 10.

- 특례대상 확대 및 과세방법 보완 등을 거치면서 2008년에 세율을 12%에서 9%로 완화(과세표준 20억원 초과 시 12%)하여 현행 제도의 근간 마련
- 제도 연혁은 <표 II-4>를 참조

<표 II-4>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연혁

개정일자	주요 개정사항
1998년 이전	- 1965년 도입되어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로 운영 - 1981. 12. 31.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규정 신설(1982. 1. 1. 시행) :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으로 하고 이들 법인에 5% 세율 적용 ¹⁾ - 「조세감면규제법」에선 공공법인에 10% 세율 적용 ²⁾
1998. 12. 28.	- 동 과세특례는 1998년 12월 28일 「조특법」으로 전면 개정 시 구법 제59조와 제60조를 제72조로 이관 - 과세표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 - 일몰 기한: 2003년 12월 31일 ※ 별도의 세무조정 없음 · 단일 세율: 12%
2000. 12. 29. ³⁾	- 과세표준 보완(세무조정사항 추가): 과세표준인 기업회계기준상에 의한 ‘당기순이익’에 접대비 및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을 합산함으로써 “당기순이익과세” 범위 확대 · 접대비 손금불산입(2001. 1. 1. 시행), 기부금 손금불산입(2003. 1. 1. 시행) ⁴⁾
2001. 12. 29.	- 특례대상 확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추가
2003. 12. 30.	- 일몰 연장: 2003년 12월 31일 → 2006년 12월 31일
2006. 12. 30.	- 일몰 연장: 2006년 12월 31일 → 2009년 12월 31일
2008. 12. 26.	- 일몰 연장: 2009년 12월 31일 → 2012년 12월 31일 - 세율 인하: 12 → 9%
2013. 1. 1.	- 일몰 연장(2년): 2012년 12월 31일 → 2014년 12월 31일 - 과세방법 보완: 세무조정 대상 확대 : 일반 비영리법인이나 중소기업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기부금·접대비 손금불산입 외에 업무무관경비·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6개 항목 추가 - “당기순이익과세”의 적용대상에 산림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 - 조합법인에 대하여 면제했던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부담을 재부여
2014. 1. 1.	- 본문 중 “손금불산입액”을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개정
2014. 12. 23.	- 일몰 연장(3년): 2014년 12월 31일 → 2017년 12월 31일 - 과세표준 20억원 초과분 세율 인상: 기존 9% 단일세율에서 누진세율(9%, 12%)로 개정

<표 II -4>의 계속

개정일자	주요 개정사항
2015. 12. 15.	- 합병기업에 대한 적용례 추가 · 12%의 누진세율 적용구간 기준금액을 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에 조합법인 간 합병하는 경우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
2016. 12. 20.	- “당기순이익과세”의 적용대상에 수협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
2017. 12. 19.	- 일몰 연장(3년): 2017년 12월 31일 → 2020년 12월 31일
2019. 12. 31.	- 세무조정 대상 확대 : 세무조정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항목 추가 ⁵⁾
2020. 12. 29.	- 일몰 연장(2년): 2020년 12월 31일 → 2022년 12월 31일
2022. 12. 31.	- 일몰 연장(3년): 2022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 조문 상 명칭 변경: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 → 기업업무추진비

- 주: 1) 제8조(공공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서 공공법인에 대한 세율(5%) 특례 신설
제9조(공공법인 등에 대한 소득계산 특례)에서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으로 하는 특례 신설
2) 「조감법」 제59조(제60조에서 당기순이익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 특례로 저율세율 적용에 대해 규정)
3) 「조특법」 제72조 개정사항
4) 2000. 12. 29. 부칙 참조
5) 「조특법」 제69조 제1항 개정(「법인세법」 제27조의2 추가)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검색일자: 2025. 6. 24.

2. 운영 현황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는 2023년 5,113억원으로 최대 규모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

<표 II -5>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의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망)	2025 (전망)
규모	1,616	2,360	2,451	2,964	3,636	3,271	3,394	3,693	5,113	3,289	3,444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조합법인의 수는 과세연도 2023년 신고기준으로 2,529개
 - 이 중 산학협력단, 영농조합, 영어조합, 정비사업조합, 학교법인을 포함하는 기타 조합법인 수가 797개, 32% 비중으로 가장 큼
 - 뒤이어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각각 25%(622개)와 21%(528개)의 비중을 차지
 - 농협의 경우에도 20%(514개)로 큰 비중을 차지
 - 수협, 산림조합, 소비자생협의 비중은 2%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

- 과세특례 조합법인 수는 2018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추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과세특례 조합법인 수는 2018년 2,665개에서 2023년 2,529개로 감소
 - 2018년 대비 2021년 과세특례 조합법인 수는 73개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0.9% 감소함
 - 2021년 대비 2023년 과세특례 조합법인 수는 63개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1.2% 감소함
 - 2022년에 과세특례 조합법인 수가 증가하였지만 2023년에 다시 크게 감소함
 - 과세특례 조합법인 수의 감소 추세는 조합법인 유형에 따라서 상이한 모습을 보임
 - 2018년 대비 감소 폭을 보인 유형들로는 새마을금고와 기타 조합법인으로 각각 9.0%, 19.1% 감소
 -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소비자생협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23년에 크게 증가하여, 2018년 대비 2023년에 오히려 증가함
 - 법인 수 기준으로는 기타 조합법인이 2018년 대비 2023년에 188개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농협이 79개로 가장 크게 증가함

〈표 II -6〉 과세특례 적용 조합법인 수

(단위: 개, %)

과세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2,665 (100)	2,626 (100)	2,598 (100)	2,592 (100)	2,601 (100)	2,529 (100)
농협	435 (16.32)	379 (14.43)	368 (14.16)	372 (14.35)	371 (14.26)	514 (20.00)

<표 II -6>의 계속

(단위: 개, %)

과세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수협	5 (0.19)	3 (0.11)	0 (0.00)	1 (0.04)	2 (0.08)	9 (0.36)
신협	515 (19.32)	519 (19.76)	527 (20.28)	524 (20.22)	520 (19.99)	528 (21.00)
새마을금고	684 (25.67)	569 (21.67)	521 (20.05)	551 (21.26)	513 (19.72)	622 (25.00)
산림조합	26 (0.98)	21 (0.8)	21 (0.81)	20 (0.77)	18 (0.69)	28 (1.11)
소비자생활협	15 (0.56)	12 (0.46)	8 (0.31)	14 (0.54)	15 (0.58)	31 (1.23)
기타 조합법인	985 (37.00)	1,123 (43.00)	1,153 (44.00)	1,110 (43.00)	1,162 (44.68)	797 (32.00)

주: 1. () 안은 연도별 비중을 의미

2. 기타 조합법인은 산학협력단, 영농조합, 영어조합, 의료법인, 정비사업조합, 학교법인을 포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수입금액 규모별 과세특례 적용 조합법인의 분포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20억원 이하의 영세조합법인은 21.4%, 20억~100억원 이하 조합법인은 35.9%, 100억원 초과 조합법인은 42.7% 차지
 - 농협과 수협의 경우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법인 비중이 가장 높음
 - 2023년 기준 농협은 95.5%, 수협은 100% 수준
 - 신협, 새마을금고, 소비자생활협은 수입금액 20억~100억원 이하 법인 비중이 가장 높음
 - 소비자생활협의 경우 2019~2021년에는 수입금액 20억~100억원 이하 법인의 비중이 감소하였지만 2023년에는 45.2%를 차지하였으며, 0~20억원 이하 법인과 100억원 초과 법인의 비중은 비슷한 수준
 -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경우 수입금액 20억~100억원 이하 법인의 비중이 약 50~60%대 수준이고, 0~20억원 이하 법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100억원 초과 법인은 증가하는 추세
 - 산림조합의 경우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법인 비중이 가장 급격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임

- 2018년에는 20억~100억원 미만 법인의 비율이 90% 이상이었지만 2023년에는 40% 정도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100억원 초과 법인은 2018년 약 8%에서 2023년 60%로 크게 증가
 - 2018년 이후 20억원 이하 법인은 없음
 - 기타 조합법인은 분석기간 동안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20억원 이하 법인은 감소, 100억원 초과 법인은 증가하는 추세
 - 2023년 기준 수입금액 20억원 이하 조합법인이 36%, 20억~100억원 이하 조합법인이 23%, 100억원 초과 조합법인이 41% 비중을 차지함
- 2022년 대비 2023년 20억원 이하 과세특례 영세조합법인의 수는 181개, 20억~100억원 이하 조합법인은 30개 감소하여 각각 25.1%, 3.2% 감소하였으며, 100억원 초과 과세특례 중·대규모 조합법인의 수는 139개 증가(전년 대비 14.8% 증가)
- 이러한 변화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남
 - 농협은 전년 대비 20억원 이하 과세특례 영세조합법인 수 44.4% 감소, 20억~100억원 이하 조합법인은 10% 감소하였으며, 100억원 초과 과세특례 중·대규모 조합법인의 수는 43.6% 증가
 - 수협과 산림조합은 20억원 이하 법인이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비슷한 추세를 보임
 -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수입규모가 20억원 이하인 조합법인은 감소하였지만, 20억원 이상 조합법인 수는 증가함
 - 신협은 20억원 이하 조합법인 수가 전년 대비 15.3%(177개 → 150개)로 감소하였으며, 20억~100억원 이하와 100억원 초과 조합법인 수가 각각 전년 대비 3.2%(281개 → 290개), 41.9%(62개 → 88개) 증가
 - 새마을금고는 20억원 이하 조합법인 수가 전년 대비 18.9%(111개 → 90개)로 감소하였으며, 20억~100억원 이하와 100억원 초과 조합법인 수가 각각 전년 대비 16.3%(337개 → 392개), 115.4%(65개 → 140개) 증가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모든 수입금액 규모에서 조합법인 수가 증가함
 - 기타 조합법인은 반대로 모든 수입금액 규모에서 조합법인 수가 감소함

<표 II -7>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분포

(단위: 개, %)

과세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계	2,620	2,591	2,578	2,592	2,601	2,529
	0~20억원 이하	786 (30)	735 (28.37)	707 (27.42)	687 (26.5)	721 (27.72)	540 (21.35)
	20억~100억원 이하	1,020 (38.93)	1,019 (39.33)	1,004 (38.94)	1,001 (38.62)	938 (36.06)	908 (35.9)
	100억원 초과	814 (31.07)	837 (32.3)	867 (33.63)	904 (34.88)	942 (36.22)	1,081 (42.74)
농협	계	435	379	368	372	371	514
	0~20억원 이하	7 (1.61)	12 (3.17)	6 (1.63)	7 (1.88)	9 (2.43)	5 (0.97)
	20억~100억원 이하	42 (9.66)	29 (7.65)	28 (7.61)	22 (5.91)	20 (5.39)	18 (3.5)
	100억원 초과	386 (88.74)	338 (89.18)	334 (90.76)	343 (92.2)	342 (92.18)	491 (95.53)
수협	계	5	3	0	1	2	9
	0~20억원 이하	-	-	-	-	-	-
	20억~100억원 이하	-	-	-	-	-	-
	100억원 초과	5 (100)	3 (100)	-	1 (100)	2 (100)	9 (100)
신협	계	515	519	526	524	520	528
	0~20억원 이하	205 (39.81)	172 (33.14)	186 (35.36)	157 (29.96)	177 (34.04)	150 (28.41)
	20억~100억원 이하	276 (53.59)	300 (57.8)	283 (53.8)	315 (60.11)	281 (54.04)	290 (54.92)
	100억원 초과	34 (6.6)	47 (9.06)	57 (10.84)	52 (9.92)	62 (11.92)	88 (16.67)
새마을금고	계	677	563	519	551	513	622
	0~20억원 이하	191 (28.21)	143 (25.4)	110 (21.19)	129 (23.41)	111 (21.64)	90 (14.47)
	20억~100억원 이하	446 (65.88)	371 (65.9)	358 (68.98)	352 (63.88)	337 (65.69)	392 (63.02)
	100억원 초과	40 (5.91)	49 (8.7)	51 (9.83)	70 (12.7)	65 (12.67)	140 (22.51)

<표 II -7>의 계속

(단위: 개, %)

과세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산림조합	계	26	21	21	20	18	28
	0~20억원 이하	-	-	-	-	-	-
	20억~100억원 이하	24 (92.31)	20 (95.24)	19 (90.48)	11 (55)	13 (72.22)	11 (39.29)
	100억원 초과	2 (7.69)	1 (4.76)	2 (9.52)	9 (45)	5 (27.78)	17 (60.71)
소비자생활협	계	15	12	8	14	15	31
	0~20억원 이하	5 (33.33)	5 (41.67)	1 (12.5)	6 (42.86)	4 (26.67)	9 (29.03)
	20억~100억원 이하	6 (40)	3 (25)	2 (25)	4 (28.57)	7 (46.67)	14 (45.16)
	100억원 초과	4 (26.67)	4 (33.33)	5 (62.5)	4 (28.57)	4 (26.67)	8 (25.81)
기타 조합법인	계	947	1,094	1,136	1,110	1,162	797
	0~20억원 이하	378 (39.92)	403 (36.84)	404 (35.56)	388 (34.95)	420 (36.14)	286 (35.88)
	20억~100억원 이하	226 (23.86)	296 (27.06)	314 (27.64)	297 (26.76)	280 (24.1)	183 (22.96)
	100억원 초과	343 (36.22)	395 (36.11)	418 (36.8)	425 (38.29)	462 (39.76)	328 (41.15)

주: 1. () 안은 연도별 비중을 의미

2. 기타 조합법인은 산학협력단, 영농조합, 영어조합, 의료법인, 정비사업조합, 학교법인을 포함

3. 수입금액 자료가 누락된 기업은 제외함

4. 수협의 경우 2020년에는 법인이 0개이므로 생략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조합법인의 과세표준 구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과세표준이 0~20억원 이하인 조합법인이 전체 조합법인 수의 74.1%로 소규모 법인이 대부분
 - 조합법인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과세표준 구간은 2억~20억원 이하 구간이며, 비중은 2020년 48.8%에서 2023년 53.3%로 증가하는 추세
 - 수협과 소비자생활협을 제외한 모든 조합법인 유형에서 과세표준 2억~20억원 이하 조합법인의 비중은 가장 높은 수준
 -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기타 조합법인은 2억원 이하에 분포하는 비중이 40%가 넘어 상대적으로 영세조합법인의 비중이 높음

- 소비자생협의 경우 0원 미만 법인의 비중이 2023년 기준 48.4%, 0~2억원 이하 법인이 41.9%로, 대부분 2억원 이하에 위치하고 있음
- 기타 조합법인은 0원 미만 법인의 비중이 2023년 기준 13.7%, 0~2억원 이하 법인이 32.6%로, 2억원 이하 법인의 비중이 두 번째로 큰 유형임
- 과세표준이 0원 미만인 조합법인의 수는 감소 추세를 보여주지만,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1년에는 10% 이상을 기록했으며, 2023년 기준 전체 조합법인 중 7.4% 비중을 차지함
- 음(-)의 과세표준을 가진 조합법인 비중은 소비자생협이 48.4%로 가장 높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감소하다가 2023년에 크게 증가함
- 농협과 산림조합의 결손 조합법인 비중이 대체로 상승하고 있으며, 신협, 새마을금고, 기타 조합법인의 결손 조합법인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
- 과세표준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조합법인의 수는 매년 1~6개로 미미한 수준

<표 II -8>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과세표준 구간별 분포

(단위: 개, %)

과세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계	2,665	2,614	2,592	2,585	2,601	2,529
	0원 미만	263 (9.87)	259 (9.91)	310 (11.96)	299 (11.57)	239 (9.19)	187 (7.39)
	0~2억원 이하	792 (29.72)	679 (25.98)	734 (28.32)	658 (25.45)	656 (25.22)	526 (20.8)
	2억~20억원 이하	1,369 (51.37)	1,373 (52.52)	1,266 (48.84)	1,337 (51.72)	1,338 (51.44)	1,348 (53.3)
	20억~200억원 이하	239 (8.97)	302 (11.55)	281 (10.84)	290 (11.22)	367 (14.11)	462 (18.27)
	200억원 초과	2 (0.08)	1 (0.04)	1 (0.04)	1 (0.04)	1 (0.04)	6 (0.24)
농협	계	435	378	368	372	371	514
	0원 미만	6 (1.38)	7 (1.85)	5 (1.36)	6 (1.61)	3 (0.81)	12 (2.33)
	0~2억원 이하	20 (4.6)	18 (4.76)	18 (4.89)	15 (4.03)	16 (4.31)	16 (3.11)
	2억~20억원 이하	305 (70.11)	241 (63.76)	246 (66.85)	248 (66.67)	231 (62.26)	300 (58.37)
	20억~200억원 이하	103 (23.68)	111 (29.37)	98 (26.63)	102 (27.42)	120 (32.35)	183 (35.6)
	200억원 초과	1 (0.23)	1 (0.26)	1 (0.27)	1 (0.27)	1 (0.27)	3 (0.58)

<표 II -8>의 계속

(단위: 개, %)

과세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수협	계	5	3	0	1	2	9
	0원 미만	- -	- -	- -	1 (100)	- -	- -
	0~2억원 이하	- -	- -	- -	- -	- -	- -
	2억~20억원 이하	3 (60)	2 (66.67)	- -	- -	1 (50)	3 (33.33)
	20억~200억원 이하	2 (40)	1 (33.33)	- -	- -	1 (50)	6 (66.67)
	200억원 초과	- -	- -	- -	- -	- -	- -
신협	계	515	519	527	523	520	528
	0원 미만	50 (9.71)	41 (7.9)	67 (12.71)	58 (11.09)	39 (7.5)	33 (6.25)
	0~2억원 이하	212 (41.17)	166 (31.98)	193 (36.62)	164 (31.36)	163 (31.35)	140 (26.52)
	2억~20억원 이하	231 (44.85)	285 (54.91)	233 (44.21)	273 (52.2)	272 (52.31)	312 (59.09)
	20억~200억원 이하	22 (4.27)	27 (5.2)	34 (6.45)	28 (5.35)	46 (8.85)	43 (8.14)
	200억원 초과	- -	- -	- -	- -	- -	- -
새마을금고	계	684	569	521	551	513	622
	0원 미만	52 (7.6)	36 (6.33)	47 (9.02)	62 (11.25)	42 (8.19)	15 (2.41)
	0~2억원 이하	178 (26.02)	134 (23.55)	115 (22.07)	127 (23.05)	105 (20.47)	94 (15.11)
	2억~20억원 이하	423 (61.84)	355 (62.39)	326 (62.57)	302 (54.81)	304 (59.26)	398 (63.99)
	20억~200억원 이하	30 (4.39)	44 (7.73)	33 (6.33)	60 (10.89)	62 (12.09)	112 (18.01)
	200억원 초과	1 (0.15)	- -	- -	- -	- -	3 (0.48)

<표 II -8>의 계속

(단위: 개, %)

과세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산림조합	계	26	21	21	20	18	28
	0원 미만	2 (7.69)	6 (28.57)	4 (19.05)	1 (5)	2 (11.11)	3 (10.71)
	0~2억원 이하	5 (19.23)	6 (28.57)	4 (19.05)	3 (15)	1 (5.56)	3 (10.71)
	2억~20억원 이하	19 (73.08)	9 (42.86)	12 (57.14)	15 (75)	15 (83.33)	21 (75)
	20억~200억원 이하	- -	- -	1 (4.76)	1 (5)	- -	1 (3.57)
	200억원 초과	- -	- -	- -	- -	- -	- -
소비자생활협	계	15	12	8	13	15	31
	0원 미만	4 (26.67)	7 (58.33)	4 (50)	5 (38.46)	5 (33.33)	15 (48.39)
	0~2억원 이하	8 (53.33)	5 (41.67)	4 (50)	4 (30.77)	7 (46.67)	13 (41.94)
	2억~20억원 이하	3 (20)	0 (0)	0 (0)	4 (30.77)	3 (20)	3 (9.68)
	20억~200억원 이하	- -	- -	- -	- -	- -	- -
	200억원 초과	- -	- -	- -	- -	- -	- -
기타 조합법인	계	985	1,112	1,147	1,105	1,162	797
	0원 미만	149 (15.13)	162 (14.57)	183 (15.95)	166 (15.02)	148 (12.74)	109 (13.68)
	0~2억원 이하	369 (37.46)	350 (31.47)	400 (34.87)	345 (31.22)	364 (31.33)	260 (32.62)
	2억~20억원 이하	385 (39.09)	481 (43.26)	449 (39.15)	495 (44.8)	512 (44.06)	311 (39.02)
	20억~200억원 이하	82 (8.32)	119 (10.7)	115 (10.03)	99 (8.96)	138 (11.88)	117 (14.68)
	200억원 초과	- -	- -	- -	- -	- -	- -

주: 1. () 안은 연도별 비중을 의미

2. 기타 조합법인은 산학협력단, 영농조합, 영어조합, 의료법인, 정비사업조합, 학교법인을 포함

3. 수협의 경우 2020년에는 법인이 0개이므로 생략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평균 수입금액은 2018년 136.3억원에서 2023년 201.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평균 수입금액의 변화 추이는 수입금액 규모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임
 - 수입금액 0~20억원 이하 조합법인의 평균 수입금액은 2018년 7.7억원에서 2023년 6.5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수입금액 20억~100억원 이하 조합법인의 평균 수입금액은 2018년 46.6억원에서 2023년 51.9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조합법인의 경우 2018년 372.8억원이던 평균 수입금액 규모가 2023년 424.4억원으로 크게 증가함

-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평균 수입금액을 조합법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8년 대비 2023년 평균 수입금액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제외한 모든 조합법인 유형에서 증가
 - 2023년 기준 평균 수입금액이 400억원 이상으로 높은 조합법인 유형으로는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법인 비중이 높았던 농협과 수협
 - 농협과 수협의 평균 수입금액은 코로나19 시기(2020년과 2021년)와 2018년(농협 374.7억원)을 제외하고 매년 400억원 이상을 기록
 - 수협은 2023년 평균 수입금액이 700억원을 초과함
 - 다음으로 높은 기타 조합법인의 평균 수입금액이 2023년에 전년 대비 30억원 가량 증가한 204.7억원
 - 상대적으로 영세조합법인의 비중이 높고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법인의 비중이 낮은 신협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평균 수입금액 규모는 2023년 기준 60억원대 수준

〈표 II -9〉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평균 수입금액

(단위: 억원)

과세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계	136.3	146.6	149.5	152.3	165.8	201.4
	0~20억원 이하	7.7	7.5	7.2	6.8	6.9	6.5
	20억~100억원 이하	46.6	46.9	49.1	48.5	48.5	51.9
	100억원 초과	372.8	390.2	381.7	377.9	404.2	424.4
농협	계	340.1	411.5	382.4	422.7	459.2	488.1
	0~20억원 이하	6.5	8.7	7.2	6.1	5.3	9.7
	20억~100억원 이하	77.2	81.3	76.0	76.9	75.3	73.8
	100억원 초과	374.7	454.1	414.9	453.4	493.6	508.1

<표 II -9>의 계속

(단위: 억원)

과세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수협	계	511.7	504.0	-	389.6	595.3	757.9
	0~20억원 이하	0.0	0.0	-	0.0	0.0	0.0
	20억~100억원 이하	0.0	0.0	-	0.0	0.0	0.0
	100억원 초과	511.7	504.0	-	389.6	595.3	757.9
신협	계	37.8	43.4	46.8	48.6	48.2	62.9
	0~20억원 이하	9.5	8.9	9.2	8.7	8.9	8.2
	20억~100억원 이하	42.9	42.8	45.2	44.7	43.5	47.5
	100억원 초과	167.0	173.7	176.9	192.7	182.1	206.9
새마을금고	계	43.1	46.3	53.2	58.6	56.1	80.7
	0~20억원 이하	12.1	12.7	12.1	11.3	12.5	11.3
	20억~100억원 이하	41.9	42.9	47.0	47.9	46.3	51.1
	100억원 초과	205.1	169.4	184.7	199.7	181.2	208.1
산림조합	계	67.7	59.9	71.2	101.4	104.2	116.1
	0~20억원 이하	0.0	0.0	0.0	0.0	0.0	0.0
	20억~100억원 이하	59.9	57.4	66.1	66.3	79.6	72.9
	100억원 초과	161.6	109.3	119.9	144.2	168.1	144.0
소비자생활협	계	71.5	81.9	130.3	104.4	87.4	63.1
	0~20억원 이하	6.4	4.0	0.1	4.8	4.2	4.6
	20억~100억원 이하	58.0	71.1	87.6	54.5	48.5	54.4
	100억원 초과	173.3	187.2	173.4	303.7	238.6	144.3
기타 조합법인	계	163.8	156.9	167.1	158.6	174.3	204.7
	0~20억원 이하	4.6	5.1	5.0	4.6	4.6	4.2
	20억~100억원 이하	53.0	51.7	51.3	50.6	52.7	57.1
	100억원 초과	412.3	390.5	410.8	374.6	402.3	462.0

주: 1. 기타 조합법인은 산학협력단, 영농조합, 영어조합, 의료법인, 정비사업조합, 학교법인을 포함
 2. 2016년 이전 자료는 사업자등록 기준이며, 2017년 이후 자료는 법인세 신고 기준으로 산출됨
 3. 수협의 경우 2020년에는 법인이 0개이므로 생략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평균 수입금액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등락을 보이거나 2022년 대비 2023년 평균 수입금액은 구간에 따라서 상이한 변화를 보임
 - 과세특례 조합법인 수입금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협의 경우 2023년 과세표준이 20억원 이하인 모든 구간에서 2022년 대비 평균 수입금액의 규모가 모두 증가

- 하지만 20억원 초과인 구간에서는 감소하였으며, 특히 20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약 70%(4,745.8억 → 1,493.0억원) 정도 감소
- 다른 조합법인 유형의 경우 대부분의 과세표준 구간에서 2022년 대비 2023년 평균 수입금액의 규모가 증가
 - 수협과 신협은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평균 수입금액 규모가 증가
 -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일부 시점을 제외하고 대부분 평균 수입금액이 증가
 - 기타 조합법인은 오히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2023년에 전년 대비 평균 수입금액이 증가하였지만 오히려 다른 구간에선 감소

<표 II -10>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과세표준 구간별 평균 수입금액

(단위: 억원)

과세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계	136.3	147.0	149.6	152.8	165.8	201.4
	0원 미만	32.0	41.6	60.2	34.3	21.0	177.7
	0~2억원 이하	26.7	23.2	34.1	28.8	25.0	30.0
	2억~20억원 이하	129.0	126.9	146.4	148.2	149.3	149.3
	20억~200억원 이하	618.8	542.8	544.9	562.7	559.1	543.8
	200억원 초과	2,476.7	16,748.8	4,196.6	4,410.8	4,745.8	1,330.6
농협	계	340.1	412.6	382.4	422.7	459.2	488.1
	0원 미만	288.6	183.4	95.3	93.6	50.5	249.7
	0~2억원 이하	100.9	44.8	132.9	91.1	64.5	182.8
	2억~20억원 이하	247.8	249.0	273.7	275.7	292.3	315.1
	20억~200억원 이하	626.5	694.6	676.9	809.2	807.7	797.5
	200억원 초과	4,071.8	16,748.8	4,196.6	4,410.8	4,745.8	1,493.0
수협	계	511.7	504.0	-	389.6	595.3	757.9
	0원 미만	0.0	0.0	-	389.6	0.0	0.0
	0~2억원 이하	0.0	0.0	-	0.0	0.0	0.0
	2억~20억원 이하	453.4	273.0	-	0.0	432.9	697.7
	20억~200억원 이하	599.1	966.0	-	0.0	757.8	788.0
	200억원 초과	0.0	0.0	-	0.0	0.0	0.0

<표 II -10>의 계속

(단위: 억원)

과세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신협	계	37.8	43.4	46.8	48.7	48.2	62.9
	0원 미만	10.5	18.5	25.4	22.0	12.6	33.3
	0~2억원 이하	17.8	15.7	20.5	21.5	14.9	16.8
	2억~20억원 이하	50.8	49.5	55.3	54.4	51.3	64.6
	20억~200억원 이하	156.8	187.0	179.1	207.1	178.2	223.3
	200억원 초과	0.0	0.0	0.0	0.0	0.0	0.0
새마을금고	계	43.1	46.3	53.2	58.6	56.1	80.7
	0원 미만	21.7	25.3	27.8	25.0	32.6	39.7
	0~2억원 이하	17.9	18.2	18.8	19.8	20.2	18.6
	2억~20억원 이하	43.2	43.9	52.5	51.6	46.6	55.3
	20억~200억원 이하	197.6	165.5	214.9	210.7	179.2	199.4
	200억원 초과	881.6	0.0	0.0	0.0	0.0	1,168.3
산림조합	계	67.7	59.9	71.2	101.4	104.2	116.1
	0원 미만	58.6	42.7	54.7	28.8	78.5	55.6
	0~2억원 이하	58.8	58.9	56.8	51.7	65.0	84.2
	2억~20억원 이하	71.0	72.0	76.1	115.8	110.3	129.0
	20억~200억원 이하	0.0	0.0	137.1	106.8	0.0	121.5
	200억원 초과	0.0	0.0	0.0	0.0	0.0	0.0
소비자생활협	계	71.5	81.9	130.3	112.4	87.4	63.1
	0원 미만	49.9	90.4	119.4	5.7	44.7	59.3
	0~2억원 이하	98.3	69.9	141.1	54.5	70.9	63.8
	2억~20억원 이하	29.1	0.0	0.0	303.7	196.9	79.5
	20억~200억원 이하	0.0	0.0	0.0	0.0	0.0	0.0
	200억원 초과	0.0	0.0	0.0	0.0	0.0	0.0
기타 조합법인	계	163.8	157.6	167.4	159.3	174.3	204.7
	0원 미만	31.4	42.7	80.4	38.6	17.8	252.1
	0~2억원 이하	30.1	26.2	39.4	32.4	28.2	29.6
	2억~20억원 이하	177.1	173.1	193.5	194.6	198.2	191.3
	20억~200억원 이하	887.5	617.8	638.8	627.3	639.0	585.5
	200억원 초과	0.0	0.0	0.0	0.0	0.0	0.0

주: 1. 기타 조합법인은 산학협력단, 영농조합, 영어조합, 의료법인, 정비사업조합, 학교법인을 포함
 2. 당기순이익 자료가 누락된 기업은 제외함
 3. 수협의 경우 2020년에는 법인이 0개이므로 생략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지 못한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와 비중은 2020년에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결손법인 수는 2018년 전체 조합법인의 10.5%인 281개였으나 2020년 전체 법인의 11.9%인 308개로 증가하였다가 2023년 7.5%인 189개로 감소
 - 농협은 2019년 기준 결손법인의 비중이 2.1%로 가장 낮은 수준
 - 농협의 적자법인 비중은 2018년 1.2%에서 2023년 2.1%로 증가였지만, 2021년 1.3%, 2022년 0.8%로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
 - 수협은 분석기간 동안 2021년에만 결손기업이 1개 발생
 - 신탁과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의 적자법인 비중은 2022년부터 10%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소비자생협은 결손법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상당히 크게 늘어나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 소비자생협의 결손법인 비중은 2018년 26.7%였으나 그 이후 매년 40% 이상으로 높으며,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과거 2013~2017년에도 결손법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였음
 - 기타 조합법인의 결손법인 수 및 비중은 2021년부터 감소하는 추세
 - 결손법인 수는 2020년 기타 조합법인의 15.9%인 183개였으나 2023년 기타 조합법인의 13.9%인 111개로 감소

〈표 II -11〉 과세특례 조합법인 중 결손법인 수와 비중

(단위: 개, %)

과세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281 (10.54)	253 (9.63)	308 (11.86)	301 (11.61)	244 (9.38)	189 (7.47)
농협	5 (1.15)	6 (1.58)	3 (0.82)	5 (1.34)	3 (0.81)	11 (2.14)
수협	0 (0.00)	0 (0.00)	- -	1 (100.00)	0 (0.00)	0 (0.00)
신탁	52 (10.10)	36 (6.94)	71 (13.47)	56 (10.69)	33 (6.35)	29 (5.49)
새마을금고	50 (7.31)	37 (6.50)	44 (8.45)	67 (12.16)	41 (7.99)	17 (2.73)
산림조합	2 (7.69)	6 (28.57)	3 (14.29)	1 (5.00)	0 (0.00)	2 (7.14)

<표 II -11>의 계속

(단위: 개, %)

과세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소비자생협	4 (26.67)	7 (58.33)	4 (50.00)	6 (42.86)	6 (40.00)	19 (61.29)
기타 조합법인	168 (17.06)	161 (14.34)	183 (15.87)	165 (14.86)	161 (13.86)	111 (13.93)

주: 1. () 안은 각 조합법인의 전체 법인 수 대비 결손법인의 비중을 의미함
 2. 기타 조합법인은 산학협력단, 영농조합, 영어조합, 의료법인, 정비사업조합, 학교법인을 포함
 3. 수협의 경우 2020년에는 법인이 0개이므로 생략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평균 당기순이익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수협과 소비자생협을 제외한 모든 조합법인 유형에서 증가
 - 2023년 농협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23.5억원으로 2018년 대비 약 1.6배 가까이 성장
 - 농협은 대부분 조합법인이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법인들로 이들 대규모 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2018년 16.6억원 수준에서 2023년 24.5억원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다음으로는 수협이 2023년 평균 당기순이익 24.3억원으로 2018년 28.9억원 대비 16% 정도 감소
 - 수협은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조합법인 수가 많지 않아 개별 조합의 수익에 따라 평균이 많이 변함
 - 과세특례 조합법인 수는 2018년 5개, 2023년 9개
 - 2023년 기준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각각 7.3억원, 13.9억원, 7.7억원으로 2018년 대비 약 70%, 121%, 185% 성장
 - 소비자생협은 가장 실적이 저조한 조합법인 유형으로 평균 당기순이익은 2018년 0.7억원 수준에서 2023년 0.3억원으로 감소
 - 2019년과 2020년에는 음(-)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함
 - 2023년 기타 조합법인의 경우 2023년 기준 당기순이익이 9.9억원으로 2018년 대비 50% 이상 증가
 - 특히 20억원 이상 수입금액 규모의 법인에 대해 당기순이익이 증가

<표 II -12>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평균 당기순이익

(단위: 억원)

과세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계	7.2	8.8	7.5	8.2	10.1	13.0
	0~20억원 이하	0.7	0.8	0.4	0.5	0.7	0.8
	20억~100억원 이하	4.2	4.7	4.0	4.2	5.6	5.9
	100억원 초과	16.6	20.5	17.0	18.5	21.8	25.1
농협	계	15.0	21.6	16.9	17.6	21.1	23.5
	0~20억원 이하	0.5	1.2	0.5	0.3	0.4	1.5
	20억~100억원 이하	3.2	3.5	3.9	3.4	3.6	2.7
	100억원 초과	16.6	23.7	18.3	18.9	22.7	24.5
수협	계	28.9	29.8	-	-5.0	19.1	24.3
	0~20억원 이하	-	-	-	-	-	-
	20억~100억원 이하	-	-	-	-	-	-
	100억원 초과	28.9	29.8	-	-5.0	19.1	24.3
신협	계	4.3	5.6	4.9	5.1	7.3	7.3
	0~20억원 이하	0.3	1.0	0.7	1.0	1.3	1.5
	20억~100억원 이하	4.6	4.5	4.0	4.1	6.2	5.6
	100억원 초과	26.4	29.7	22.7	23.9	29.9	23.0
새마을금고	계	6.3	6.6	6.2	8.0	9.0	13.9
	0~20억원 이하	1.7	1.3	0.8	0.7	1.0	1.6
	20억~100억원 이하	4.7	5.5	4.9	4.9	5.9	6.7
	100억원 초과	39.8	27.7	25.9	37.4	38.9	41.9
산림조합	계	2.7	1.8	3.3	6.5	8.1	7.7
	0~20억원 이하	-	-	-	-	-	-
	20억~100억원 이하	2.3	1.6	2.1	2.5	5.5	4.0
	100억원 초과	7.6	7.6	14.9	11.4	14.7	10.0
소비자생활협	계	0.7	-0.4	-0.4	1.6	0.5	0.3
	0~20억원 이하	0.9	0.1	-0.1	-0.6	-0.9	0.0
	20억~100억원 이하	0.8	-0.3	0.3	0.8	0.1	0.4
	100억원 초과	0.2	-1.2	-0.7	5.6	2.6	0.5
기타 조합법인	계	6.1	7.5	6.4	6.7	8.5	9.9
	0~20억원 이하	0.3	0.5	0.1	0.3	0.4	0.2
	20억~100억원 이하	3.3	4.1	3.3	3.7	4.9	5.5
	100억원 초과	14.3	17.1	14.9	14.8	18.0	20.7

주: 1. 혼자 조합법인을 기준으로 작성

2. 기타 조합법인은 산학협력단, 영농조합, 영어조합, 의료법인, 정비사업조합, 학교법인을 포함

3. 수입금액 또는 당기순이익 자료가 누락된 기업은 제외함

4. 수협의 경우 2020년에는 법인이 0개이므로 생략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과세표준이 0원 미만과 200억원 초과인 조합법인을 제외하고는 평균 당기순손익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개선되는 모습
 - 평균 당기순손익 규모는 2018년 7.2억원 수준에서 2023년 13.0억원 수준으로 증가
 - 과세표준이 0원 미만인 조합법인의 경우 당기순손익이 2018년 -2.1억원 수준에서 2023년 -4.7억원 수준으로 경영상황 악화
 - 과세표준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조합법인의 경우 당기순손익이 2018년 489.7억원에서 2019년 1,590.3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3년 225.7억원으로 오히려 2018년보다도 감소한 수준
 - 2017년부터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기타 조합법인에서는 평균 당기순손익이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나 수협, 소비자생협에서는 평균 당기순손익이 감소함
 - 평균 당기순손익의 개선은 과세표준 2억~20억원 이하 구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결손 조합법인의 비중이 높은 소비자생협은 당기순손익이 가장 낮았으며, 2019년과 2020년에는 당기순손익이 적자를 기록했다가 2023년까지 약간 회복한 상황

<표 II -13>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과세표준 구간별 평균 당기순손익

(단위: 억원)

과세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계	7.2	8.8	7.5	8.2	10.1	13.0
	0원 미만	-2.1	-2.4	-3.2	-2.3	-1.3	-4.7
	0~2억원 이하	0.7	0.7	0.7	0.7	0.7	0.7
	2억~20억원 이하	6.4	6.8	6.8	7.2	7.7	8.3
	20억~200억원 이하	39.1	40.8	39.0	40.4	42.7	45.2
	200억원 초과	489.7	1590.3	216.4	208.2	210.3	225.7
농협	계	15.0	21.6	16.9	17.6	21.1	23.5
	0원 미만	0.7	-16.8	-8.7	-0.5	-9.5	-19.1
	0~2억원 이하	0.9	0.9	0.9	1.1	1.0	1.5
	2억~20억원 이하	7.8	8.3	8.0	8.5	9.3	9.9
	20억~200억원 이하	38.1	41.7	41.3	41.4	45.6	47.9
	200억원 초과	230.1	1590.3	216.4	208.2	210.3	177.7
수협	계	28.9	29.8	-	-5.0	19.1	24.3
	0원 미만	-	-	-	-5.0	-	-
	0~2억원 이하	-	-	-	-	-	-
	2억~20억원 이하	17.2	6.6	-	-	12.9	12.1
	20억~200억원 이하	46.5	76.1	-	-	25.3	30.4
	200억원 초과	-	-	-	-	-	-

<표 II -13>의 계속

(단위: 억원)

과세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신협	계	4.3	5.6	4.9	5.1	7.3	7.3
	0원 미만	-2.6	-4.4	-4.0	-3.9	-1.3	-1.6
	0~2억원 이하	0.8	0.8	0.9	0.9	0.9	1.0
	2억~20억원 이하	6.0	6.1	6.1	6.2	7.0	7.2
	20억~200억원 이하	37.2	44.8	36.9	38.6	39.5	36.3
	200억원 초과	-	-	-	-	-	-
새마을금고	계	6.3	6.6	6.2	8.0	9.0	13.9
	0원 미만	-3.4	-2.1	-2.7	-4.1	-2.7	-19.1
	0~2억원 이하	1.0	0.9	1.0	0.9	1.0	1.1
	2억~20억원 이하	5.7	6.0	6.2	6.6	6.6	8.0
	20억~200억원 이하	38.6	36.2	37.2	42.7	42.6	43.1
	200억원 초과	749.3	-	-	-	-	273.7
산림조합	계	2.7	1.8	3.3	6.5	8.1	7.7
	0원 미만	-3.5	-1.4	-1.4	-2.0	1.3	-0.2
	0~2억원 이하	1.6	1.0	1.0	1.7	1.1	3.0
	2억~20억원 이하	3.6	4.5	4.4	7.1	9.4	8.7
	20억~200억원 이하	-	-	18.2	20.2	-	23.6
	200억원 초과	-	-	-	-	-	-
소비자생활협	계	0.7	-0.4	-0.4	1.7	0.5	0.3
	0원 미만	-0.9	-0.9	-1.0	-0.7	-2.6	-0.5
	0~2억원 이하	0.3	0.2	0.2	0.8	0.5	0.5
	2억~20억원 이하	3.7	-	-	5.6	5.6	3.9
	20억~200억원 이하	-	-	-	-	-	-
	200억원 초과	-	-	-	-	-	-
기타 조합법인	계	5.9	7.4	6.3	6.8	8.5	9.9
	0원 미만	-1.6	-1.5	-2.9	-1.3	-0.8	-2.8
	0~2억원 이하	0.5	0.6	0.5	0.5	0.5	0.4
	2억~20억원 이하	6.5	7.1	7.1	7.5	7.9	8.1
	20억~200억원 이하	40.9	40.6	38.3	38.6	41.4	47.3
	200억원 초과	-	-	-	-	-	-

주: 1. 기타 조합법인은 산학협력단, 영농조합, 영어조합, 의료법인, 정비사업조합, 학교법인을 포함

2. 당기순이익 자료가 누락된 기업은 제외함

3. 수협의 경우 2020년에는 법인이 0개이므로 생략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023년 기준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평균 실효세율은 9.3% 수준이고 당기순이익 규모와 누진세율구조로 인해 조합법인 유형 및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 당기순이익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농협과 수협의 평균 실효세율은 9.3%로 다른 유형들보다 높은 수준이고, 당기순이익 규모가 가장 작은 신협과 소비자생협의 평균 실효세율은 8.2%, 8.5%로 가장 낮음
 - 신협과 비슷한 당기순이익 규모를 가진 산림조합(7.7억원)의 경우 9.0%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수입금액 규모별로 평균 실효세율을 살펴보면 역진성이 나타남
 - 수입금액 20억원 이하 조합법인의 경우 8.7%, 20억~100억원 이하는 8.3%, 100억원 초과인 경우 9.3%로 나타남
 - 이러한 실효세율 격차는 과세표준 20억원을 기준으로 2단계 누진세율(9%/12%)이 적용되기 때문

<표 II -14>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평균 실효세율(2023년 기준)

(단위: %)

구분	전체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	산림	생협	기타
전체	8.8	9.3	9.3	8.2	8.8	9.0	8.5	8.9
0~20억원 이하	8.7	9.0	-	8.5	8.5	-	9.0	8.9
20~100억원 이하	8.3	8.9	-	8.0	8.6	9.0	8.0	8.3
100억원 초과	9.3	9.3	9.3	8.6	9.7	9.0	9.0	9.3

주: 1. 평균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대비 총부담세액을 의미

2. 기타 조합법인은 산학협력단, 영농조합, 영어조합, 의료법인, 정비사업조합, 학교법인을 포함

3. 과세표준이나 총부담세액 자료가 누락된 기업은 제외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 외국의 조합법인 등 조세지원제도

가. 미국

- 미국은 「Capper-volstead Act」(1922)에 의거, 협동조합을 고유한 사업 형태로 인정한 이후 1962년 미국 연방법(United States Code)의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에 Section 521 Exemption of farmers' cooperatives from tax와 Subchapter T를 신설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과세규정 마련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익 분배인 경우 협동조합의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으며(손금산입), 활동조합원(patron)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
 - 협동조합의 소득에 대하여 조합원 단일과세 방식

- 협동조합이 다음의 자격³⁾을 갖추면 「내국세법」 제521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생산자 또는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농업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협동조합 방식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협회
 - 협동조합이 주식발행으로 설립되는 경우 협동조합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고 농업자재를 구매하는 생산자가 모든 의결권 주식을 소유해야 함(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의 해석에 의하면 당해 연도 협동조합을 이용하는 생산자가 85% 이상의 의결권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조건을 충족한다고 봄)
 - 출자배당금은 연 8% 또는 조합 관할 주의 법정 이율 이하
 - 조합의 유보금이 적정 수준을 넘어서거나 주 법률에 의해 규정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됨
 - 협동조합은 비조합원과의 사업량이 50% 이내여야 하고 비조합원과 비생산자에게 공급되는 상품의 구매량이 조합 전체 구매량의 15% 이내여야 함(정책 사업량은 제외)
 - 가격결정, 공동계산, 판매이익의 배분, 이용고배당금의 배분 등에 대해 비조합원을 조합원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함
 - 협동조합은 모든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이용량과 조합지분에 대한 정보를 영구히 보존해야 함

-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Patronage dividend)⁴⁾에 대해 Subchapter T §1388(a)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는데, 그 요건⁵⁾은 다음과 같음
 - 활동조합원이 이용한 해당 협동조합의 서비스 양이나 가치에 따라 배분금액이 결정되어야 함
 - 사전약정에 의하여 분배금액이 결정되어야 함(해당 협동조합이 해당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받기 전에 결정)

3) 김예은(2015), p. 39.

4) 우리나라 법령에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용어가 없어 이용고배당이라 지칭하는 경우도 있고, 이익 배분의 의미를 강조하여 배분금이라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본고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이용고배당으로 통일함.

5) 김완석·심태섭(2012), p. 23.

- 해당 협동조합이 활동조합원에 대한 사업 결과로 발생한 순이익에 의하여 배분 금액이 결정되어야 함
- 협동조합의 단위당자본적립금(Per-Unit Retain)도 과세소득에서 제외됨
 - IRC §1388(f)에 의거, 협동조합과 조합원의 사전서면 약정 또는 정관 규정에 따라 협동조합의 손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판매 단위당 배분액에 대해 손금산입됨
- RC §1388(a)에 의거,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납입출자 배당은 우리나라와 같이 총수입에서 공제할 수 없음⁶⁾

나. 일본

- 일본은 협동조합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다양한 종류의 조합이 각각의 근거법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고 있음
 - 일반 영리 법인과 달리 세제상 우대조치를 취하지만 조합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과세상 차이가 존재⁷⁾
- 일반법인의 법인세율이 23.2%인 반면 조합법인은 19%의 세율을 적용함
 - 보통법인, 일반 사단법인, 인격 없는 사단의 경우 법인세율이 23.2%(연 800만엔 이하 19%)이지만, 조합법인의 경우 19%가 적용됨

<표 II -15> 일본의 법인 유형별 세율 현황

구분	규모	조항	세율(%)
보통법인, 일반 사단법인, 인격 없는 사단	연 800만엔 초과 부분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23.2
	보통법인 또는 일반 사단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엔 이하인 경우, 연 800만엔 이하 부분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19
조합법인 등	사업소득 10억엔 이하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19
	사업소득 10억엔 초과	『조세특례조치법』 제68조	초과분에 22

자료: e-GOV 法令檢索, https://laws.e-gov.go.jp/law/340AC0000000034/#Mp-Pa_2-Ch_1-Se_2-Ss_1-At_66, 검색 일자: 2025. 5. 13.

6) 문귀영(2020), p. 89.
7) 손원익 외(2013), p. 58.

- 「조세특별조치법(租稅特別措置法)」 제68조에 특정 협동조합 등에 대한 법인세율 특례를 규정
 - 「법인세법」 제2조(정의) 제7항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등에 해당하는 조합에는 모든 소득에 대해 일반 법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⁸⁾
 - 「법인세법」 별표 제3 협동조합 등에 해당하는 조합에 공제수산업협동조합연합회, 어업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등 30여 곳이 넘는 조합이 열거되어 있음⁹⁾
 - 제68조(특정 협동조합 등의 법인세율 특례) 특정 지역 또는 구역에 관련된 협동조합 등(청산 중인 사업연도 제외)의 사업연도가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사업연도 총수입금액 중 물품공급사업 비중 50% 초과
 - 조합원 수 50만명 이상
 - 물품공급사업 중 점포 수입금액 \geq (1천억엔 \times 사업연도 개월 수 \div 12)
 - 해당 협동조합 등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 및 기타 법인세 관련 법령 적용 시 다음 규정을 준용
 - 10억엔 이하는 기본 세율 19% 적용
 - 10억엔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22%를 적용¹⁰⁾

- 협동조합 등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 시 지출하기로 결의한 다음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함(「법인세법」 제60조의 2)
 - 사업 이용 분량 기준 배당금
 - 조합원 등 구성원에게 해당 사업연도 중 취급한 물품의 수량·가액 또는 협동조합 사업 이용 분량에 따라 배당하는 금액
 - 사업 참여 정도 기준 배당금
 - 조합원 등 구성원에게 해당 사업연도 중 협동조합 사업에 참여한 정도에 따라 배당하는 금액

8) 손원익 외(2013), p. 63.

9) 개별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은 별표 제3 협동조합 등의 표를 참조할 수 있음. e-GOV 法令檢索, https://laws.e-gov.go.jp/law/340AC0000000034/#Mpat_3, 검색일자: 2025. 5. 12.

10) 「조세특별조치법」 제68조, https://laws.e-gov.go.jp/law/332AC0000000026#Mp-Ch_3-Se_8, 검색일자: 2025. 5. 13.

- 이용고배당의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이유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잉여금 처분이나 조합의 잉여금이 주로 조합원의 조합 사업의 이용에 의해 발생하므로, 이는 조합원에 대한 일종의 할인혜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임¹¹⁾
 - 이용고배당을 지급하려면 조합 결산 시 잉여금 처분을 확정하고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함

- 일본은 협동조합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특별공제를 허용¹²⁾
 - 출자조합인 상공조합, 상공조합 연합회, 사업협동조합 및 사업협동소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생활위생동업조합, 생활위생동업조합연합회, 소비생활협동조합 및 소비생활협동조합연합회 중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출자금이 1억엔(소비생활협동조합 및 소비생활협동조합연합회는 1천만엔) 이하일 경우

다. 프랑스

- 프랑스는 협동조합의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1947년 「협동조합의 지위에 관한 법률 (Loi n° 47-1775 du 10 septembre 1947, portant statut de la coopération)」을 제정하여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익 배분 방식 등 협동조합의 전반적인 구조와 규칙을 규정함
 - 협동조합의 형태는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협동조합과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협동조합으로 구분됨
 - 은행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은 일반법의 적용을 받고 영리법인과 같은 형태를 가짐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각각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며, 각 개별법에서 협동조합의 목적, 조합원, 이익분배 등에 관해 규정¹³⁾

-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개인회사 형태이면 개인소득세, 법인 형태이면 법인세가 과세됨¹⁴⁾

11) 손원익 외(2013), p. 65.

12) 김완석·심태섭(2012), p. 25.

13) 손원익 외(2013), p. 72.

14) 손원익 외(2013), p. 75.

- 프랑스의 거대 농업협동조합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 기업이 납부하는 일반적인 법인소득세가 면제됨¹⁵⁾
-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이용고배당은 과세소득에서 공제됨
 - 납입출자에 대한 법정이자는 이익이 실현된 연도에만 지급할 수 있으며, 배당이 아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봄¹⁶⁾
 - 잉여금의 배분은 농업협동조합(sociétés coopératives agricoles) 등의 경우 조합원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은 법인세가 면제되고, 소비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그리고 집단농업이익회사(sociétés d'intérêt collectif agricole)는 분배가 가능한 금액의 50% 이하를 한도로 수수료(또는 환급, ristournes)로 공제¹⁷⁾

라. 독일

- 독일은 협동조합에 관한 일반법으로 「상업 및 경제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Gesetz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이 존재함¹⁸⁾
- 독일의 협동조합의 조직 체계는 DGRV(독일협동조합·라이파이젠협회)를 중심으로 BVR(독일협동조합은행연합회), DRV(경제사업연합회), ZGV(도시협동조합중앙회), ZdK(소비자협동조합중앙회)로 구분되며 산하에 지역 연합회 및 특별 연맹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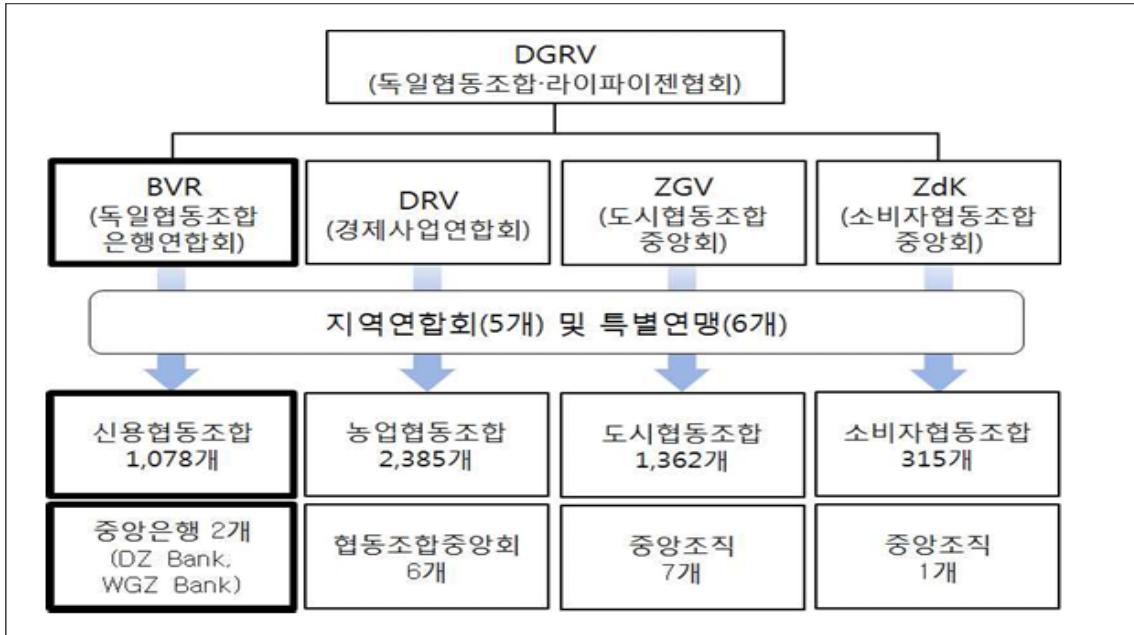
15) *The Cooperator*, “Global minimum tax to hit French farm cooperatives,” <https://thecooperator.news/global-minimum-tax-to-hit-french-farm-cooperatives/>, 검색일자: 2025. 5. 14.

16) 손원익 외(2013), p. 74.

17) 문귀영(2020), p. 99.

18) Bundesamt für Justiz, “Gesetz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Genossenschaftsgesetz-GenG) Inhaltsübersicht,” https://www.gesetze-im-internet.de/genG/inhalts_bersicht.html, 검색일자: 2025. 5. 16.

[그림 II -1] 독일 협동조합 조직체계



자료: 박준기(2014), p. 8.

- 독일의 경우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의 제10호 및 제14호((Körperschaftsteuergesetz (KStG) §5 Befreiungen (1) 10, 14)에 협동조합 및 협회의 법인세 면제 규정을 명시함¹⁹⁾
 -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의 제10호(협동조합 및 협회, 다음과 같은 경우)
 - a) 주택을 생산 또는 취득하여 임대 계약 또는 협동조합 사용 계약에 근거하여 조합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 b) a)의 의미에 해당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공동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주로 조합원을 위한 것이고 협동조합 또는 조합의 운영이 필요한 경우
 -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의 제10호의2
 -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활동으로 인한 회사의 소득이 총소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면세 대상에서 제외
 -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의 제14호(협동조합 및 협회, 사업 운영이 제한적인 경우)
 - a) 농업 및 임업 시설이나 장비의 공동 사용
 - b) 농업 및 임업 분야의 서비스인 경우 회원의 사업을 위한 농업 및 임업 제품 생산을 위한 서비스 또는 작업 계약 틀 내에서의 서비스

19) Bundesamt für Justiz, “Körperschaftsteuergesetz(KStG) § 5 Befreiungen,” https://www.gesetze-im-internet.de/kstg_1977/_5.html, 검색일자: 2025. 5. 16.

- c) 회원이 직접 취득한 농산물 및 임산물의 가공 또는 이용에 관한 것으로서 그 가공 또는 이용이 농업 및 임업 분야에 속하는 경우
- d) 회원 소유의 농산물 및 임산물의 생산이나 활용에 관한 조인
-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의 제14호의2
 - 제1항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면세대상에서 제외
- 「법인세법」 제25조(농업 및 임업에 종사하는 협동조합 및 협회에 대한 면제)는 농업 및 임업을 운영하는 협동조합(Genossenschaften)과 단체(Vereine)에 대한 법인세 공제 특례를 규정함
 - 공제액은 최대 1만 5천유로(단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이 1만 5천유로 미만인 경우 소득 금액 한도)이고, 설립연도를 포함해 총 10년이 적용됨
 -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 농림업 운영을 위해 토지 또는 필요한 건물을 제공해야 함
 - 제2항에 따라 공동 축산업(gemeinschaftliche Tierhaltung)을 운영하는 협동조합 및 단체도 동일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법인세법」 제22조(협동조합 환급)는 협동조합의 이용고배당금(genossenschaftliche Rückvergütung)에 대한 세무 처리 방식을 규정함
 - 협동조합의 특수성(비영리·구성원 지원)을 반영한 특별 규정으로, 특정 조건 하에서 환급금을 사업비용(Betriebsausgaben)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이용고배당금은 구성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됨
 - 판매·생산 협동조합: 회원으로부터의 상품 구매 비율 ÷ 전체 상품 구매액
 - 타 협동조합: 회원 매출액 ÷ 전체 매출액

마. 영국

- 영국의 협동조합(Co-operative)은 일반적으로 법인세(Corporation Tax)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취급되며, 특별히 협동조합만을 위한 포괄적 세제 감면은 존재하지 않음

- 일부 협동조합의 성격·사업범위·공익성 등에 따라 다음의 세제 혜택 또는 우대가 적용될 수 있음
- CTM40000은 영국 내 다양한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특수목적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적용 원칙과 예외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HMRC(영국 국세청)의 세무 해설서(Company Taxation Manual)로 협동조합 관련 법인세 감면 사항을 열거함
 -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거래 실적에 따라 받는 배당(dividend)은 비용으로 인정되어 과세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음(면제는 아님)²⁰⁾
 - 한편 조합법인이 자선단체(registered charity)로 설립되어 있고, 그 이익이 자선 목적에 사용될 경우 법인세 면제²¹⁾
 - 승인된 협동조합 주택협회도 회원이 납부하는 임대료와 협회가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법인세 면제²²⁾
 - 농업 및 어업 협동조합(agricultural and fishing co-operatives)은 CTM40580에 의거, 등록조합과 동일하게 취급
 - 등록조합(registered society)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이자 및 주식배당(share dividends)에 관한 세법상 특례를 적용받음(CTA10/S1055²³⁾)²⁴⁾
- 영국의 경우 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금과 출자금에 대한 이자는 세무신고 시 공제됨²⁵⁾
 - 이 과정에서 조합원이 해당 조합과의 거래량의 크기에 따라 지급되는 배당, 할인 혹은 리베이트 등은 과세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서 인정됨
 - 또한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사업은 세무 목적상 이익창출행위로 간주하지 않음

20) GOV UK, “CTM40505 - Particular bodies: registered societies: general,”<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ompany-taxation-manual/ctm40505>, 검색일자: 2025. 5. 19.

21) GOV UK, “CTM40055 - Particular bodies: charities: general,”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ompany-taxation-manual/ctm40055>, 검색일자: 2025. 5. 19.

22) GOV UK, “CTM40420 - Particular bodies: housing associations: co-operatives - nature of relief and claim,”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ompany-taxation-manual/ctm40420>, 검색일자: 2025. 5. 19.

23) CTA10/S1055는 영국 「법인세법(Corporation Tax Act 2010)」에 규정된 조항으로, 등록조합(registered societies) 및 농업·어업 협동조합이 지급하는 이자(share/loan interest)를 회사 배당(distribution)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임.

24)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ompany-taxation-manual/ctm40580>, 검색일자: 2025. 5. 19.

25) 김완석·심태섭(2012), p. 26.

바. 스페인

- 스페인은 「헌법」 제129조 제2a항에 ‘정부는 적절한 입법을 통해 협동조합 운동을 촉진하여 스페인의 사회경제체를 구성하고 있는 협동조합을 민간경제단체로서 장려해야 한다’고 규정함²⁶⁾
 - 또한 「협동조합의 세금 제도에 관한 법률 20/1990」, 1990년 12월 19일(Ley 20/1990, de 19 de diciembre, sobre Régimen Fiscal de las Cooperativas)이 일반법으로 존재
 - 이 밖에 5개의 자치지역(Andalucía, Cataluña, Valencia, País Vasco, Navarra)에서 「협동조합법」을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²⁷⁾
 - 「헌법」과 협동조합에 관한 특별법 외에 5개 자치지역(Andalucía, Cataluña, Valencia, País Vasco, Navarra)에서 자체적으로 「협동조합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²⁸⁾

- 스페인 협동조합에 대한 세율은 「법인세법」 중 ‘Special tax scheme for cooperative groups’ 부분에서도 규정되어 있음
 - 스페인의 법인세율은 25%이지만, 협동조합 본연의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 또는 조합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
 - 특별보호를 받는 노동자협동조합(Cooperativas de Trabajo Asociado), 농업협동조합(Cooperativas Agrarias), 커뮤니티 토지이용 협동조합(Cooperativas de Explotación Comunitaria de la Tierra), 어업협동조합(Cooperativas del Mar), 소비자협동조합(Cooperativas de Consumidores y Usuarios)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50% 환급해 줌(「협동조합의 세금 제도에 관한 법률 20/1990」, 제34조)

- 협동조합 소득을 산정할 때, 협동조합의 소득과 협동조합 외 소득으로 구분됨²⁹⁾
 - 협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다음과 같음(Art. 17. Ingresos cooperativos)
 - 조합원들과 함께 수행하는 협동조합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 조합원이 납부하는 정기 회비
 - 당좌 보조금

26) 스페인 「헌법」 제129조 제2a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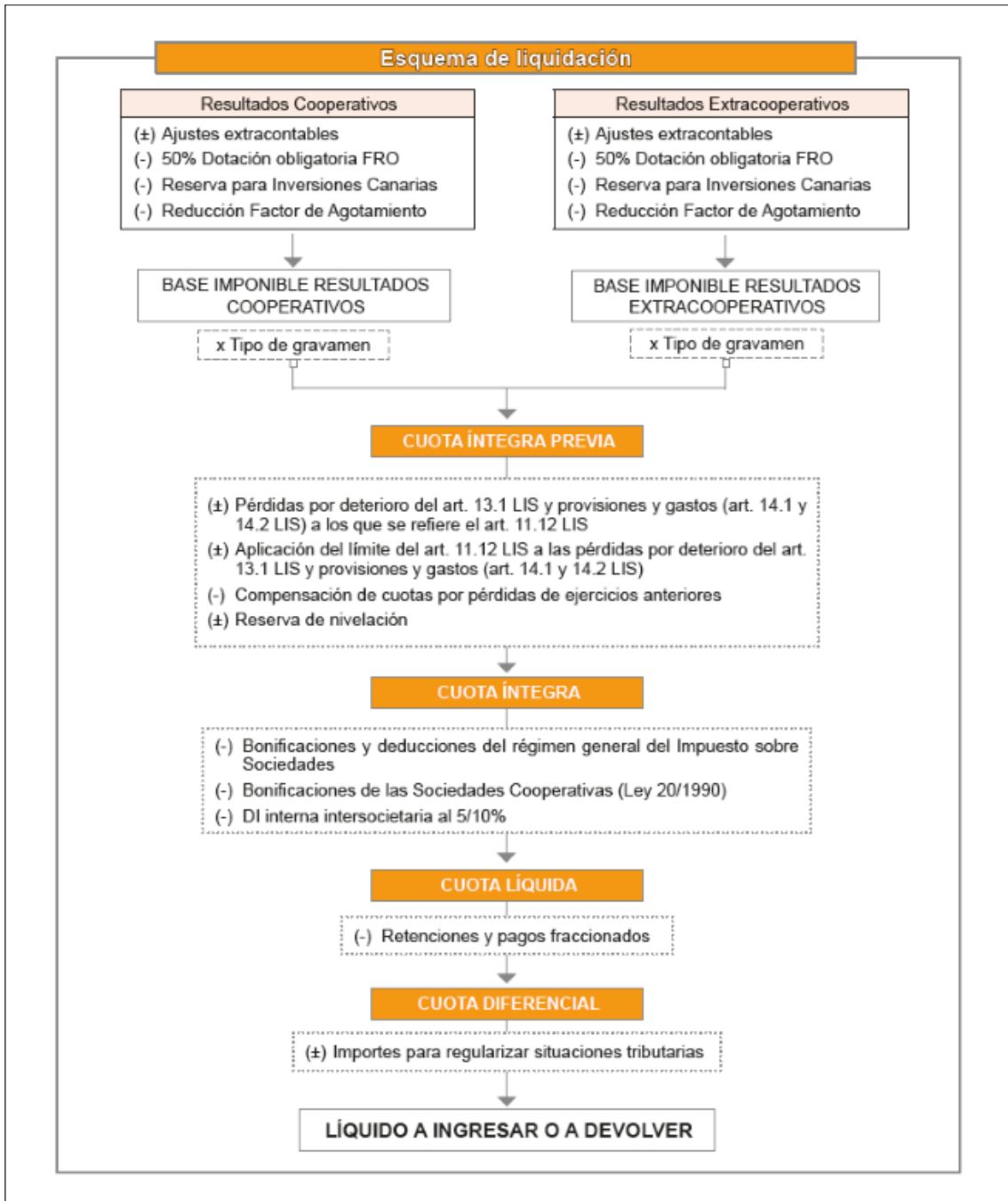
27) 김수환(2009), p. 53.

28) 손원익 외(2013), p. 81.

29) 「협동조합의 세금 제도에 관한 법률 20/1990」, Jefatura del Estado, <https://www.boe.es/eli/es/l/1990/12/19/20>, 검색일자: 2025. 6. 13.

- 1978년 12월 27일자 「법인소득세법」 제61/22조에 규정된 방식으로 회계연도에 배정된 자본 보조금
 - 조합원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자격으로 다른 협동조합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수익
 - 협동조합 활동 수행에 필요한 일반 자금 관리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소득
 - 협동조합 활동 외 소득은 다음과 같음(Art. 21. Rendimientos extracooperativos)
 - 비회원과 협력 활동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 비협조적 회사에 대한 투자 또는 재정적 참여의 파생상품
 - 협동조합의 특정 목적 이외의 경제활동이나 재원으로부터 얻은 것
 - 협동조합의 신용 부문에서 발생하는 수익(단 회원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 신용협동조합을 통해 얻은 수익, 공공기금 및 공공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제외)
- 「협동조합의 세금 제도에 관한 법률 20/1990」에는 자격 상실 요건이 명시되어 있음
- 어떠한 협동조합도 그 유형에 관계없이 비회원 제3자와 협동조합 총거래액의 50%를 초과하는 거래를 수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세금 보호 협동조합 자격을 상실함(Art. 13. Causas de pérdida de la condición de cooperativa fiscalmente protegida.)
 - 협동조합의 법인세 정산은 [그림 II-2]를 따름

[그림 II -2] 스페인 협동조합의 법인세 정산 흐름도



자료: 「스페인 협동조합의 세제」, <https://sede.agenciatributaria.gob.es/Sede/ayuda/manuales-videos-folletos/manuales-practicos/manual-sociedades-2023/capitulo-11-regimen-fiscal-cooperativas/esquema-liquidacion-is-sociedades-cooperativas.html>, 검색일자: 2025. 6. 13.

〈표 II -16〉 OECD 회원국들의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비교

국가	2025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 순이익 과세	세제상 특례		
	중앙	지방 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기타 사항
호주 (Australia)	30.0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목적을 위한 회사 중 매해 사업의 90%를 조합원들과 거래하는 경우 조합법인으로 인정 - 조합원들의 소비와 필요에 따른 재화의 구입 - 조합원들에 의해 생산된 재화의 판매 - 조합원들의 생산품 저장, 판촉, 포장 및 가공 -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 조합원들의 주거 또는 주거와 사업에 대한 필요한 자금의 상호신용을 위해 조합원들로부터의 예금 및 대출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고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지급된 리베이트 또는 보너스를 손금산입 (section120(1) of the ITAA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와 배당 지급이 가능하며 손금산입 (section120(1) of the ITAA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외의 사항은 일반 법인과 동일한 과세체계를 따름
오스트리아 (Austria)	25.0	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법인 관련 특별법은 없으며 1873년 제정(2008년 최근 개정)된 일반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의무규정은 거의 없고 대부분 개별 조합의 정관에 의해 자치적으로 규제 - 따라서 이용고배당 등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일반법인과 동일한 과세 체계를 적용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고배당금액이 조합원과의 거래 금액의 1% 이내 이고 해당 사업연도 초에 이용고배당에 대한 사전 공지가 조합원들에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손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에 따라 가능한 나 세제상의 특례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으로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단위: %)

〈표 II -16〉의 계속

(단위: %)

국가	2022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 순이익 과세	세제상 특례		기타 사항
	중앙	지방 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벨기에 (Belgium)	25.0	25.0	- 조합법인 근거법은 「company code of 1990」이며, 가변적 자본과 회원을 가진 회사로 규정 - 세법상 조합법인은 전체 조합법인 2만 5천개 중 400개에 불과	없음	아니오	- 조합 정관에 따라 가능하나 세제상의 혜택은 없음	- 결산일 현재 순자산 가액이 자본금보다 적 은 경우 불가하며, 가 능하다라도 세제상의 혜택은 없음	- 기본적으로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 National Cooperative Council과 조합법인 으로서 준수해야 할 요건에 대한 협 약을 체결한 일부 협동조합의 경우 1) 출자금에 대한 이자(이자율 6% 한도)의 배당소득 으로 재분류 금지 2) 원천세 면제 3) 법인세 감면 4) 조합원에 대한 할 인금액 비과세 등 의 혜택이 부여됨

〈표 II -16〉의 계속

(단위: %)

국가	2022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 순이익 과세	세제상 특례		
	중앙	지방 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기타 사항
캐나다 (Canada)	15.0	26.2	- 다음의 목적 중 하나 이상을 위해 연방법 또는 지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1) 성상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 1차 상품을 조합원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2) 원료, 기자재 또는 조합원을 위한 생활용품을 구매·공급한 경우 3) 조합원을 위한 서비스를 수행한 경우	없음	아니오	- 이용고배당 이전에 고객들과의 계약 시 이용고배당의 가 능성을 제시한 경 우에 한하여 손금 신입 허용되나, 모든 납세자(협동조합을 포함)에게 허용되는 공통사항 - 비회원고객에게도 이용고배당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고객과 비회원 고객 사이에 배당 률의 차이가 나면 손금한도를 회원 고객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과 비회원고객에게 지 급한 이용고배당의 합계로 계산	- 조합법인 자체의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처음 50만달 러의 소득까지는 여타 중소기업의 인의 세율인 11%를 적용 - 배당처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 연 방정부의 감면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 며 이익을 배당하 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음	

〈표 II -16〉의 계속

국가	2022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과세세율	당기순이익과세	세제상 특례		기타 사항
	중앙	지방 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칠레 (Chile)	10.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법(the article 47 of the LGC)」을 따르는 이윤공유 목적의 협동조합을 제외하고 Decree 502(1978년 제정, 2002년 개정)에 의해 협동조합을 규정 - 이러한 협동조합은 이윤을 추구할 수 없음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고배당은 손금 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금 또는 할당저축에 대한 이자지급은 손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법인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이지만, 조합법인으로 부터 받은 조합원들의 이자 및 배당은 소득세 과세 대상임
체코 (Czech Republic)	19.0	1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또는 기타 다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결성된 사업체(sec. 221, par. 1, Commercial Code)이며 주태조합과 지주 및 신용조합에 대한 특별법만 존재하고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조합의 정관에 위임 - 신용조합은 허용되나 재보험 및 은행 업무는 협동조합이 진입할 수 없음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에 따라 가능한 하나 세제상의 특례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에 따라 가능한 하나 세제상의 특례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덴마크 (Denmark)	22.0	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법인의 일반적 정의는 「Consolidate Act on Certain Commercial Undertakings (No651 of 15.6.2006)」에 의해 규정되거나 세부사항은 각 조합법인의 정관에 위임 	없음 (기타 사항 참조)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항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항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협동조합법인은 일반법인과 동일한 과세 기준을 적용

(단위: %)

〈표 II -16〉의 계속

(단위: %)

국가	2022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 순이익 과세	세제상 특례		기타 사항
	중앙	지방 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덴마크 (Denmark)								- 다만 다음의 조건 을 만족하는 경우 협동조합의 순가치 의 4~6%를 적용 하여 과세대상 소득 을 결정하고 이에 14.3%의 세 율로 법인세 과세 조건 1) - 최소 10명의 조합 원들이 구매자 또 는 공급자로서 조 합법인의 사업에 참여 조건 2) - 비조합원과의 거래를 통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음

〈표 II -16〉의 계속

(단위: %)

국가	2022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 순이익 과세	세제상 특례		
	중앙 포함	지방 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기타 사항
덴마크 (Denmark)								조건 3) - 이윤에서 출자 또는 투자금 비율에 따라 지급(중앙은행의 정상이자율을 초과 할 수 없음)하고 남은 잉여를 이용 고에 따라 조합원 에게 배분하거나 채투자 위해 유보
에스토니아 (Estonia)	20.0	20.0	- 조합법인의 일반적 규정은 「the general law on commercial association of 2001」에 따르며 특별법으로는 「신용 조합과 건물 및 아파트 조합에 관한 법」이 있음 - 일반법에서 조합의 해산 전까지는 배분할 수 없는 법적 강제 적립금, 이용고배당, 투자금에 대한 보상까지 규정하고 있음	없음	아니오	- 일반법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각 조합법인의 정관에 따라 가능하나, 세제상의 특례는 없음	- 일반법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각 조합법인의 정관에 따라 가능하나, 세제상의 특례는 없음	-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표 II -16〉의 계속

(단위: %)

국가	2022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과세세율	당기순이익과세	세제상 특례		
	중앙	지방 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기타 사항
핀란드 (Finland)	20.0	20.0	- 「협동조합 일반법(the general law on Cooperatives of 2001)」에 의해 협동조합 관련 강제 적립금, 이용고배당, 투자금에 대한 이자보상 등 세부사항까지 규정	없음	아니오	- 일반법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각 조항범인의 정관에 따라 가능하며 손익 산입	- 일반법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각 조항범인의 정관에 따라 가능하나, 세제상의 특례는 없으나 일부 조합(낙농 및 가축조합)의 경우 일반법인보다 더 엄격	- 이용고에 따른 배당 이외에 여타 사항은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프랑스 (France)	25.8	25.8	- 「1947년 법(the law of 1947)」은 조합법인의 주요 목적을 회원들을 위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거나 제품의 품질을 제고하거나 회원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함으로 규정 - 농업이나 공예품 분야의 조합에 관한 다수의 특별규정이 있어서 법체계가 복잡 - 특별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비조합원이 해당 조합의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제한	없음	아니오	- 비조합원과의 거래가 허용된 경우라도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거래에 의해 발생된 이익만을 이용고에 따라 조합원에게만 배분 가능하며 조합원이 최대주인 소 비자조합과 금융조합의 경우 손익 산입	- 경제부에서 고시한 평균 회사채수익률을 한도로 출자금에 대한 이자형태로 지급 가능하나, 세제상의 특례는 없음	- 일반 투자자의 비율이 50% 미만이고, 비조합원과의 거래 비중이 과세대상 매출액의 20%를 넘지 않는 농업협동조합의 경우에 법인세 면제 - 이외의 사항은 일반법인 과세체계를 따르고 개인회사의 형태를 띠는 경우 개인소득과 세제계를 따름

〈표 II -16〉의 계속

국가	2022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 순이익 과세	세제상 특례		기타 사항
	중앙 포함	지방 포함				이용고매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독일 (Germany)	15.8	29.8	- 「Cooperative Societies Act of 1889」(최근 개정 2006)에 의해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비조합원과의 거래, 투자자 본에 대한 보상, 해산 시 자산청산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조합법인의 정관에 따름	없음	아니오	- 정관에 따라 가능하고 손금산입하나, 조합원과 조합법인 사이의 거래에 의해 발생된 이익을 한도로 손금산입	- 정관에 따라 가능하나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 이용고매당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이외에 사항은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 다만 농업 및 임업 장비의 공동사용, 농업 및 임업 관련 서비스, 조합원이 생산한 농업 및 임업제품의 가공 등의 활동에 중사하는 협동조합의 수익 90% 이상이 해당 활동에서 발생되는 경우 면세
그리스 (Greece)	22.0	22.0	- 「민법」과 특별법에 의해 조합법인의 형성 및 운영을 관장하나 그리스에서 협동조합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통상적인 조직체로 볼 수 없음 - 대표적 조합법인은 「민법」상의 조합법인과 「지방법」에 따른 조합법인으로 구분	없음	아니오	- 「지방법」에 따른 조합법인의 잉여(surplus, 조합원과 거래로부터 발생)에 대한 이용고매당이 가능하나, 세제상의 특례는 없음	- 지방조합법인 잉여 배당이 가능하며 이익(profits, 비조합원과의 거래로부터 발생)은 투자자에 유리한 경우 가능	- 지방조합법인에 대한 감면사항을 제외하고 조합법인은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 지방조합법인의 감면사항은

(단위: %)

〈표 II -16〉의 계속

(단위: %)

국가	2022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 순이익 과세	세제상 특례		
	중앙 포함	지방 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기타 사항
그리스 (Greece)						- 「민법」상 조합법인 이익(profits, 비조 합원과의 거래로 부터 발생)을 이 용고에 따라 조합 원에게 배당 가능	- 이익의 50%를 배분 가능	① 유보한 잉여에 대한 법인세 면제 ② 몇몇 거래에 대한 인지세 면제 ③ 자본축적에 대한 비과세 ④ 다양한 경우의 VAT 비과세
헝가리 (Hungary)	9.0	9.0	- 「민법」에 근거한 7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법인으로서 회원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조합 법인의 회원은 자연인과 법인일 수 있으나 법인회원의 수는 자연 인 회원의 수를 넘을 수 없음	없음	아니오	- 이용고배당은 가 능하나 손금산입 특례는 없음	- 정관에 따라 가능하 나 세제상의 특례는 없음	- 자연인 회원과 그 가족들에게 사회적 부조, 문화적 도움 등을 지원하기 위 해 조합법인은 fellowship fund에 이익금의 일정 부분 을 적립할 수 있고 이익금의 6.5%를 한도로 적립금은 면세

〈표 II -16〉의 계속

국가	2022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과세세율	당기 순이익과세	세계상 특례		
	중앙	지방 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기타 사항
아일랜드 (Ireland)	12.5	12.5	「Industrial and Provident Societies Act 1893-1978」에 따라 등록된 협동조합 및 「Credit Union Act 1997」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 그러나 협동조합의 요건, 업종 등에 대한 규정은 없음	없음	아니오	- 이용고에 따라 지급되는 할인, 리베이트, 배당, 보너스 등은 손금산입	- 정관에 따라 가능하나 세제상의 특례는 없음	- 출자금에 대한 이자 지급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 - 주 거주지가 아일랜드 이외의 지역인 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에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이탈리아 (Italy)	24.0	27.8	-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상호 공동의 목적을 위해 가변적 자본을 가진 공동체(societies)로서 비조합원과의 거래가 특정 수준 이하로 제한되는 MMC(mainly mutual cooperatives)와 그러한 제약이 없는 기타 조합(other cooperatives)으로 구분됨	없음	아니오	- 이용고에 따라 환급(Refund)할 수 있으며, 손금으로 신입 - 환급은 배당과 구분	- 기타조합의 경우에 해서 출자금 지분에 따라 배당할 수 있지만 세계상의 혜택은 없음	- 이외의 사항은 협동조합들은 기본적으로 일반별인과 동일하게 과세
일본 (Japan)	23.2	29.7	- 「corporation tax law」, Sch. 3에 열거된 조합법인과 연합회(예: 농업협동조합과 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연합회)	19	아니오	- 조합법인 이용고에 따른 배당 손금산입 허용		- 중소기업인의 경우 최소 800만엔까지의 소득은 19%로 과세하므로, 조합법인의 저울과세세율은 기준 조세체계 안에 있음

(단위: %)

〈표 II -16〉의 계속

(단위: %)

국가	2022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 순이익 과세	세계상 특례		기타 사항
	중앙 포함	지방 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일본 (Jap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협동조합의 경우 법인 설립일 이후 10년을 경과하는 날을 포함하여 사업연도까지 그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보할 경우 유보금액의 32%까지는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
룩셈부르크 (Luxembourg)	18.2	24.9	- 협동조합 설립근거법은 「the law on commercial companies of 1915」이며, 기본적인 사항 이외의 적립금, 이용고배당 등의 구체적 사항들은 조합법인의 정관에 위임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에 따라 가능하지만 세계상의 특례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법인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협동조합의 경우 비영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대해 비과세 - 농협 관련 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의 농임업 농장과 기계의 공동사용, 농산품의 판매 또는 가공에서 발생한 이익에 한해서만 비과세

〈표 II -16〉의 계속

(단위: %)

국가	2022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 순이익 과세	세제상 특례		기타 사항
	중앙	지방 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멕시코 (Mexico)	30.0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일반법(Ley General de Sociedades Cooperativas)」과 「상업회사 일반법(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에 의해 협동조합이 설립 - 기본적으로 공유된 노동과 서비스로부터 생산된 제품의 상업화, 유통, 저장 및 수송을 위해 개인들에 의해 조직된 사업체로 규정 	없음 (7)타 사항 참조)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고배당 손금 산입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법인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으로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하나 다음의 조세유인이 시행되고 있음 - 감독기관에 의해 투명경영을 실천하는 조합법인으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는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모든 소득은 조합원의 소득으로 배분되고 개인소득세로 과세(2006년 개편) - 2014년에 발생하는 조합법인 소득에 한해 조합원에게 배분되지 않고 2년간 유보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3년째 과세하는 과세이연제도 시행(2014년 개편)

〈표 II -16〉의 계속

(단위: %)

국가	2022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 순이익 과세	세계상 특례		
	증상	지방 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기타 사항
네덜란드 (Netherlands)	25.8	2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법」에 근거하여 협동조합이 설립되거나 구체적 사항은 협동조합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음 상호보협협동조합(cooperative insurance companies(mutual))에 대해서는 특정규제가 적용되거나 여타 특별법은 없음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합원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에 한해 이용고에 따라 배당할 수 있으며 손금산입 허용 이용고배당 이외의 회계장부상 이익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1년 이내에 자연인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금액과 전기 오류 수정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관에 따라 가능하며 일반법인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고배당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동일한 일반법인과 동일한 법인세 규정
뉴질랜드 (New Zealand)	28.0	2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operative Company Act 1996」에 따라 협동조합 요건을 갖춘 회사가 「Company Act 1992」에 의해 법인화된 경우 조합법인은 60%의 조합원이 현재 재화와 용역을 조합법인에 공급하거나 조합법인으로부터 구매하고 있어야 함 농업분야부터 택시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합법인과 조합원 사이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으로 이용에 따라 조합원에게 주는 리베이트는 손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외의 조합법인의 과세는 일반법인과 동일 조합과의 거래에 따라 발생한 조합원의 리베이트는 개인소득세 과세

〈표 II -16〉의 계속

(단위: %)

국가	2022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 순이익 과세	세계상 특례		
	중앙	지방 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기타 사항
노르웨이 (Norway)	22.0	22.0	- 협동조합에 관한 일반법과 건물 및 주택조합과 상호보험회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이용고배당, 투자자금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적 적립금에 관한 규정은 없음	없음 (기타 사항 참조)	아니오	- 과세대상 조합법인의 경우 이용고배당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 5년 만기 국채 이자율 보다 3%p 이상 높은 이자율로 보장 가능하며, 세무상 처분은 일반법인과 동일	- 영리조직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비영리조직으로 구분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수익사업의 경우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폴란드 (Poland)	19.0	19.0	- 협동조합 일반법과 신용조합, 은행조합, 농업생산자단체, 주택조합, 사회적 조합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협동조합의 기본사항을 규정 - 협동조합은 법정 적립금을 관리하고 조합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수 없도록 규정	없음	아니오	- 협동조합 일반법 규정에 따라 이용고배당이 가능하나 세계상 손금산입 특례는 없음	- 정관에 따라 가능한 나 세계상의 특례는 없음	-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포르투갈 (Portugal)	30.0	31.5	- 회원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에 따라 조직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가변적인 자본을 가짐(「cooperative code 1996」) - 활동 영역은 소비, 교역, 농업, 신용, 주거, 생산 공예, 서비스, 문화, 교육,	없음	아니오	- 이용고배당 여부는 협동조합 유형에 따라 다름: 교육 협동조합의 경우 연간 이익의 50% 까지 가능하지만	- 배당금이 조합원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연간이익의 30%를 넘지 못하는 일반법인 규정이 있으며, 일부 조합의 경우 배당이 20%만 면제	- 세계상의 혜택은 조합원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은 법인세가 면제되며, 일부 협동조합의 경우 20%만 면제

〈표 II -16〉의 계속

(단위: %)

국가	2022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 순이익 과세	세계상 특례		기타 사항
	중앙	지방 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포르투갈 (Portugal)			공공부조 등 다양			일부 협동조합의 경우(housing and social solidarity) 배당 불가능 - 그러나 세계상의 혜택은 없음	불가하며 세계상의 혜택은 없음	
슬로바키아 (Slovak Republic)	21.0	21.0	- 「상법」(Commercial code §221)에 의해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여타 특별법은 없음 - 최소 조합원 수를 5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적 강제적립금 등이 규정되어 있음	없음	아니오	- 이용고배당은 가능하나 손금산입 특례는 없음	- 정관에 따라 가능하나 세계상의 특례는 없음	-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슬로베니아 (Slovenia)	19.0	19.0	- 「협동조합에 관한 일반법(the Act on Cooperatives(Zakon ozadrugeth))」에 의해 최소 조합원 수 3명(법인 회원 포함)으로 설립 가능하며 주로 농업분야에서 활동 - 조합원과의 거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조합원과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며 투자자 조합원이 허용되고 회사채 발행 등의 재무 활동도 가능	없음	아니오	- 일반법 규정에 따라 이용고배당은 가능하지만 손금산입 특례는 없음	- 일반법 규정에 따라 가능하지만 손금산입 특례는 없음	-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표 II -16>의 계속

(단위: %)

국가	2022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과세세율	당기 순이익과세	세계상 특례		기타 사항
	중앙	지방 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스페인 (Spain)	25.0	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 부분을 제외한 특정 협동조합에 대한 특별법은 없으며 14개 자치지역에 적용되는 「협동조합법」과 특정지역으로 활동이 제한되지 않는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협동조합법」(1999)에 근거하고 있음 - 조합원들이 원하는 모든 분야의 경제적 활동에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음 	20.0 (기타 사항 참조)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잉여금은 조합원에게 이용고에 따라 배분 가능하나 세제상 특례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상 이익이 있는 경우 사전에 규정되어 있는 지급내역에 따라 연 6% 또는 범정이율을 한도로 지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법인의 이익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조합원 거래에 의한 이익과 ② 자본이득을 포함한 조합원 이외의 자와의 거래에 의한 이익으로 구분 - ①과 ②의 값이 음수(-)이더라도 ①에는 20%를 적용하고 ②에는 30%를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합산
스웨덴 (Sweden)	20.6	2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은 없으나 모든 협동조합들은 경제적 연합회에 관한 법률(the law of economic associations)에 의해 규제됨 - 협동조합 또는 경제적 연합회는 회원들의 참여를 통해 회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조합원이 특정 과세연도에 조합법인 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경우에만 한하여 이용고배당, 할인 금액의 손금 산입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법인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산된 세액이 음수(-)인 경우 환급되지는 않고 10년간 이월 공제받을 수 있음 -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표 II -16〉의 계속

(단위: %)

국가	2022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 순이익 과세	세계상 특례		
	증양	지방 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기타 사항
스위스 (Switzerland)	8.5	19.7	- 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연방법 (Swiss Code of Obligations)」에 의해 설립되지만 스위스 지방법에 따라 설립되기도 함 - 자본금이나 조합원 수에 대한 규 정은 없으나, 조합원의 경제적 이 익을 도모하거나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없음	아니오	- 연방과 주의 법인 소득세 산정 과정 에서 모두 이용고 배당 및 할인금액 을 상업적 경비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	- 일반법인과 동일	- 이용고배당 손금 산입 이외에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터키 (Turkey)	23.0	230.	- 「협동조합 일반법(the Cooperative Act)」에 의해 설립되며, 주요 설립 목적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사업지원에 두고 있음 - 최소 7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설립 가능	없음	아니오	- 조합원과의 거래만 을 하고 적립금이나 여타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 이용고 에 따라 배분 가능 하고 손금산입	- 일반법인과 동일	- 조합원과의 거래 만을 하는 협동조 합에 한하여 이용 고배당 손금산입 이 가능함 - 이 외의 사항은 일 반법인과 동일한 과세체계를 따름
영국 (United Kingdom)	19.0	19.0	- 조합법인에 관한 특별한 제약 없이 설립 가능	없음	아니오	- 조합원과 조합법인 사이의 거래량 또 는 금액에 따르는 이용고배당, 할인, 리베이트 등은 손 금으로 산입됨	- 조합법인 규정 에 따라 배당 은 가능하지만 이 에 대한 세법상 특례는 없음	- 조합원만을 대상 으로 하는 협동 조합의 사업은 세 무목적상 이익창출 행위로 간주하지 않음

〈표 II -16〉의 계속

국가	2022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 순이익 과세	세계상 특례		기타 사항
	증양	지방 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영국 (United Kingdom)							이용고배당	- Cooperative housing association의 회원이 조합법인에 지불한 월세(rent)와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자는 세무상 무시하며 조합이 보유하던 고정자산의 처분 이익도 과세대상에서 제외. 이 외의 사항은 일 반법인과 동일한 과세체계를 따름
미국 (United States)	21.0	25.8	- 조합원을 위해 공동구매 및 판매 행위를 위해 조직된 법인으로 기본적으로 일반법인과 동일한 과세체계 유지. 다만 이용고배당 등 추가적 손금산입 항목으로 세제상의 혜택	없음	아니오	- 조합원이 해당 조합법인과 수행한 거래량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조합법인의 순이익에서 배당하는 이용고배당을 손금으로 인정(IRC§1388(a)).	- 농업 관련 협동조합에 한하여 출자금 또는 자본금에 대한 배당을 손금으로 허용(IRC§1382(c)(1))	- 이 외에 단위당 자본적립 배당(per unit retain allocation)은 해당 조합원을 대신해서 조합법인이 판매한 상품량에 기초하여 그 조합원에게 현금 또는 상환가능

(단위: %)

〈표 II -16〉의 계속

(단위: %)

국가	2022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과세세율	당기 순이익과세	세계상 특례		기타 사항
	증상	지방 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미국 (United States)								증서로 배당하는 것으로 그 금액을 손금산입 (IRC§1388(f)) - 미국정부 및 관련 기관을 위한 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 등 비조합원 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과세대상이나 농업 관련 조합에 한하여 해당 이익을 배당할 경우 손금으로 처리 (IRC§1382(c)(2)) - 조합원들의 배당소득은 과세대상 (IRC§1385)

주: 1. 칠레의 기본세율은 27.0%(중소기업 25.0%)이나 2020~2022년 동안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율 10% 적용

2. 룩셈부르크 기본세율은 과세소득에 따라 15.0~17.0%이나 부가세를 고려할 경우 최고세율은 18.19%(지방세 고려 시 최고 24.94%)

3. 포르투갈 기본세율은 21.0%이나 과세소득에 따라 부가세(surtax)로 3~9%p 추가 과세

자료: OECD Statistics(<https://stats.oecd.org>), "Statutory corporate income tax rate"; 전병목·권성준(2020), pp. 74~90, <표 III-2> 등을 참조

4. 다른 유형의 법인 조세특례와의 비교

가. 공익법인과 조세지원 차별성 유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공익성을 고려하여 다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을 하는 자를 ‘공익법인등’으로 정의함
 -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이 이에 해당하며, 그 밖에 종교단체·공익단체(소득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등 법인이 아닌 단체 등도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포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운영하는 사업
-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88&cntntsId=7751>, 검색일자: 2025. 6. 25.

- 공익법인의 세제 혜택은 다음³⁰⁾과 같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비영리법인(공익법인등 포함)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1)에 따른 기부금(舊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30)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89&cntntsId=7752>, 검색일자: 2025. 6. 25

-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으로 처분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봄
-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 비영리법인(공익법인등 포함)의 이자소득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방법에 의해 납부한 것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됨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간이신고서식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
 -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공익법인등 포함)은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한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신고·납부
 - 다만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무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하지 아니함

나. 중소기업 지원제도와와의 연관성 등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만 적용되는 법인세 공제·감면사항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내용은 <표 II-17>과 같음
 -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와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꼽을 수 있음

<표 II -17>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에 적용되는 지원제도

구분	지원내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75%, 100%) 세액감면(「조특법」 §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해 5~30%를 세액감면(「조특법」 §7)
기술이전·대여 세액감면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2)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구매대금의 0.15%, 0.3%, 0.5% 세액공제(「조특법」 7의4)

<표 II -17>의 계속

구분	지원내용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10%(중소 20%)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근로자의 전년 대비 임금증가액 합계×10%(중소 20%)추가공제(「조특법」 §29의4)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총급여 7천만원 초과인 자, 임원 등 제외)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한 것에 한함) 그 경영성과급의 15%(2025년 이후 10%) 세액공제(「조특법」 §19)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연간 임금감소 총액 × 1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 × 15%를 세액공제(「조특법」 §30의3)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75%, 100%) 세액공제(「조특법」 §30의4)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 최저한세율을 일반법인에 비해 3~10% 우대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62&cntntsId=7988>, 검색일자: 2025. 6. 25

- 다만 세법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그 요건에서 다소 차이가 있어, 이를 충족시켜야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세법상 중소기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함
 -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 업종별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³¹⁾의 기준 이내여야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해야 함

31)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84%ED%91%9C%EC%84%9C%EC%8B%9D/\(%EC%A4%91%EC%86%8C%EA%B8%B0%EC%97%85%EA%B8%B0%EB%B3%B8%EB%B2%95%EC%8B%9C%ED%96%89%EB%A0%B9,%20%EB%B3%84%ED%91%9C1](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84%ED%91%9C%EC%84%9C%EC%8B%9D/(%EC%A4%91%EC%86%8C%EA%B8%B0%EC%97%85%EA%B8%B0%EB%B3%B8%EB%B2%95%EC%8B%9C%ED%96%89%EB%A0%B9,%20%EB%B3%84%ED%91%9C1), 검색일자: 2025. 6. 25.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등

Ⅲ. 타당성 분석



Ⅲ. 타당성 분석

1. 조합법인 과세특례제도 도입 배경 및 개요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근거하여, 농어민과 서민층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해당 특례는 협동조합의 이익 중 일정 부분을 저율로 과세하거나 간소화된 방식으로 과세함으로써 조합의 자율성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설계됨
 - 협동조합은 본질적으로 조합원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비영리적 성격의 조직이지만, 사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납세 의무를 부담함
 - 다만 조합의 이익은 대부분 조합원 복지, 지역사회 환원, 공익 목적 등에 주로 재투자되며, 일반 영리법인과는 실질적인 운영 목적과 성격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별도의 과세체계를 설계할 필요성이 정당화되어 왔음
- 특히 1970년대 이후 농어촌 경제 기반이 취약해지고 서민금융의 공백이 확대되면서 협동조합이 농수산물 유통, 소액금융, 자산 형성 지원 등의 정책 전달 체계로서 기능함에 따라 조세 감면을 통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강화되었음
- 이 같은 배경에서 1980년대에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주요 조합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제도가 최초 도입되었으며, 이후 적용 대상과 내용이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총 8개 조합 유형에 적용되고 있음
 - 각 조합법인은 모두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개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표 III-1> 조합법인별 설립 취지와 사업 내용

구분	설립 취지	사업 내용
「신용협동조합법」	공동 유대를 바탕으로 신용협동조직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신용사업(예금·적금 수납, 대출, 유가증권 보관 등), 복지사업, 공제사업, 조합원 교육, 국가·공공단체 위탁사업 등 수행
「새마을금고법」	자주적 협동조직과 상부상조 정신에 기반하여 자금 조성 및 이용, 회원의 지위 향상, 지역사회 개발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신용사업, 문화복지후생사업, 회원 교육, 지역사회 개발, 공제사업, 국가·공공단체 위탁사업 등 수행
「농업협동조합법」	농업인의 자주적 협동조직을 통해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 국민경제 균형발전에 기여	교육지원, 경제사업(농자재 구매,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등), 신용사업, 공제사업, 복지후생, 국가·공공단체 위탁사업 등 수행
「수산업협동조합법」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지위 향상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어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생활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자의 협동조직 설립과 운영을 통해 경제적 기회 균등과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사업과 공동시설 설치·운영 등 수행
「산림조합법」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협동조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촉진, 산림생산력 증진, 구성원의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임업 교육훈련, 산림정보 제공, 경제사업, 산림경영사업, 신용사업, 복지사업 등 수행
「연초생산협동조합법」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해 잎담배 생산력 증진,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경제 기여	경작기술 보급, 자금 융자 및 물자 알선, 신용사업, 기타 조합원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 등 수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비자들의 자발적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	생활물자 구매·공급, 공동이용시설 설치·운영, 교육·문화·복지 사업, 부대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타사업 등 수행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검색일자: 2025. 6. 24.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는 조합법인에 대해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한 간편과세 방식과 저율과세(9~12%)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일반 기업과 구별되는 세제 지원체계를 운용하고 있음
 - 적용 방식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과세표준 산정 간소화: 일반 법인의 경우 손익계산서 외에 세무 조정(익금·손금 산입/불산입 등)이 필요하나 조합법인은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단순 세율을 적용함
 - 저율 적용: 과세표준 20억원 이하 구간은 9%, 20억원 초과분은 12% 세율을 적용하여 일반 법인세율(최고 25%) 대비 유리한 구조를 유지
 - 조합원 이용실적 기반 과세의 배제: 일부 실적 배당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외국과 달리 국내는 전체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단순성과 납세 편의성에 중점을 둔 구조임

- 이들 조합은 일정한 자율성과 민간성을 갖고 있는 동시에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정책 목적과 기능을 공유하고 있어 조세특례를 통한 간접 지원의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실제로 이들 조합은 농어촌 공동체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유통, 금융, 교육, 복지 등)를 수행하며,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다만 최근에는 일부 대형 조합의 외형 확장과 영리적 사업 확대, 조합원 환원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조세특례가 본래 목적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균형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도입 취지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제도적 검토와 함께 실제 정책 목표(조합원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달성 여부, 공익적 성과, 형평성, 제도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2. 선행연구 검토

□ 국내 연구

- 이환웅·강동익·전주용(2022),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 조합법인 과세특례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의 납세 편의와 세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나, 실제 제도의 운영과 효과에 대한 의문 제기됨
 - 과세특례의 구조는 당기순이익 기준의 간편한 과세표준 산정과 저율세율 적용이라는 2단계 완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이는 일반법인 대비 조세형평성과의 괴리를 발생시킬 수 있음
 - 조합법인의 매출 증가율, 당기순이익, 산출세액 등을 분석한 결과 세율 인하가 성과 향상에 미치는 유의미한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음
 - 조세특례를 이용실적 배당의 손금산입 등 보다 직접적인 조합원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비조합원 대상 사업에 대해 일반 법인세 적용을 제안함
 - 또한 회계·세무 분리를 통해 공익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규모 조합에 대한 역진적 혜택을 축소하는 구조 개편이 필요함
- 전병목·권성준(2020),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는 일정한 정책적 필요성과 정당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실제 조세 지원이 상대적으로 과도하다는 지적 제기됨
 - 특히 특례 적용 조합법인의 매출 성장률 및 당기순이익 증가율을 유사한 조건의 일반법인과 비교한 결과, 특례가 조합법인의 외형 성장이나 수익성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흔적은 뚜렷하지 않음
 - 이러한 분석 결과는 조세특례가 조합법인의 자생력 강화나 생산성 향상과 같은 본래 기대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조합법인 과세특례제도는 도입 취지를 보다 명확히 정립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성과 환원 구조나 조합원 실익 증대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나아가 조세지원이 조합 자체에 귀속되는 현행 구조보다는 조합원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성이 있음
- 전병목·류덕현,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조합법인은 비영리조직의 외형과 달리 실질적으로 영리활동을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어 과세특례의 공익성 및 정당성이 약화됨
- 실질적으로는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성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음
- 실증분석 결과 2014~2015년 평균 순이익률은 일반법인보다 낮았고, 특히 소규모 조합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졌음
- 이에 따라 일반과세로의 단계적 전환, 이용고배당 손금산입 허용, 세무조정 항목 확대 등의 개선방향을 제안함

□ 해외 연구

- Saz Gil, I., Bretos, I. & Díaz Foncea, M., “Cooperatives and Social Capital: A Narrative Literature Review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2021.
 -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지역사회 밀착이 조합 내부에서 신뢰·네트워크·규범 등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고, 이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구조적 역할을 강조하는지에 대한 기존 연구 문헌들을 정리함
 - 지역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신뢰와 조직 밀도는 협동조합 설립과 성장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양자는 상호 강화적 관계를 형성함
 - 다만 내부의 과도한 동질성과 폐쇄성은 외부 네트워크 단절이나 혁신 저해 등 어두운 면을 유발할 수 있음
- Garcia, A.V., Bastida, M. & VázquezTaín, M.A., “Tax Measures Promoting Cooperatives: a fiscal driver in the contex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2020.
 - 스페인 및 유럽의 과세지원 제도가 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했으나 최근 들어 혜택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임
 - 분석 결과 조합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희석되고 있어, 오히려 일부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부응할 필요성이 강조됨
- Caves, R. E. & Petersen, B. C., “Cooperatives’ Tax Advantages: Growth, Retained Earnings, and Equity Rotation,” 1986.
 - 1962~1980년 미국 상위 100개 협동조합의 재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면적 세제 통합은 조합의 자기자본 조달 비용을 크게 낮춘다는 것을 보임
 - 이를 통해 조합들은 내부 유보를 활용한 성장을 촉진하고, 자본 회전을 통해 저비용으로 조달한 자본을 유지하며 고성장을 달성했음을 확인함

3. 정부 개입의 타당성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를 근거로 하여 농어민 및 서민 경제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정부가 이를 세제 지원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을 갖고 있음
 - 해당 조세특례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연연초생산협동조합 등 8개 유형의 협동조합 법인을 대상으로 함
 - 각 조합은 비영리성과 지역 기반성, 조합원 자치운영을 기본 구조로 하며, 금융·유통·기술지도·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 단위로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기능은 정부의 직접 지원이 미치기 어려운 영역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고 평가받고 있음
 - 각 조합의 공익적 기능 및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농협은 도농 상생을 위한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 농촌 어르신 복지센터 운영, 영농도우미 지원 등 농촌 복지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수협은 어촌마을 의료봉사, 어업인 장학금 및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다문화 가정 지원 등 해양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새마을금고는 장학금 지급, 재난구호 기금 조성, 지역아동센터 후원, 사랑의 줌도리 운동 등 지역밀착형 복지 및 상부상조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
 - 산림조합은 산림기술 지도와 임업인 교육을, 신협은 햇살론 출연, 조합원 교육, 복지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음
 - 법령상 명시된 목적 규정은 없으나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자체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과세특례는 조합원에 대한 간접적 지원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고도 볼 수 있음
 - 과세특례를 통해 절감된 세액이 이러한 사업에 재투입됨으로써 조합의 공익 기능을 일부 강화하는 구조로 작동함

〈표 III-2〉 각 조합의 공익적 기능 및 활동

조합 유형	공익적 기능 및 활동
신용협동조합	금융 취약계층 대상 금융복지 제공, 금융포용 정책 참여, 지역사회 안정망 역할
새마을금고	생활금융·장학·상조·재난구호, ODA 금융모델 전수, 지역공동체 복지 증진
농업협동조합	농가 복지공간 제공, 도농 연계, 농업인 대상 복지 플랫폼 역할
수산업협동조합	어촌 의료·장학·환경·주거 복지, 다문화가정 지원,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산림조합	탄소흡수, 산림보전·교육, 임업인 복지 및 지역 생태계 유지
엽연초생산협동조합	고령·소규모 농가 보호, 계약재배 안정, 수매시장 유지
중소기업협동조합	소기업 협업·스마트화, 거래비용 절감, 지역산업 공익기반 조성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안전식품·친환경소비 확대, 약자 돌봄·요양 서비스 제공

자료: 각 조합의 홈페이지 참조하여 저자 작성

- 그러나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실제로 정책 목표인 조합원 보호 및 공익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음
 - 정부는 2019년 기준 조합법 과세특례를 통해 약 3,597억원의 세수를 감면했으며, 이는 전체 법인세 감면 항목 중 7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함
 - 반면 감면 혜택이 조합원 개인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귀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는 다소 부족함
 - 세제혜택이 오히려 조합 운영의 재무적 안정성 확보나 내부 자본 적립으로 우선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형 조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공익사업 확대 기반이 될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조합원 개인이 체감하는 실질적 혜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존재함
 - 특히 일부 대형 조합의 경우 외형 성장은 두드러지지만 조합원 배당 확대나 복지 지출 확대 등으로의 연결 고리가 미약한 상황임
 - 이환웅·강동익·전주용(2022)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는 조세특례가 조합 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했으나, 13%는 조합 경영성과가 조합원 복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해 혜택의 전이 구조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함
 - 배당 성향이나 사회공헌비 지출 비율이 낮은 일부 대형조합의 경우 세제감면 혜택이 조합원보다는 조합 자체에 집중된다는 지적도 있음

- 또한 신탁의 경우 법인세 감면액 대비 사회공헌활동비 비율이 2021년 기준 77.9%로 목표치(100%)에 미치지 못했다는 보고도 있음

□ 현재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구조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 외부의 이용자에게도 혜택이 분산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정책 수혜 대상의 불일치라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 신탁, 새마을금고 등 금융조합의 경우 준조합원 제도를 통해 비조합원에게도 금융 및 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도 조합법인에 귀속되어 법인세 감면 혜택을 간접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실정임
- 현행 법령 및 감독규정에 따라 각 조합은 비조합원 대상 사업 비중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으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조합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그 결과 준조합원 비중이 불가피하게 확대되는 경향도 존재함
 - 신탁은 감독기준에 따라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신용사업 이용 비중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정관 또는 중앙회 지침을 통해 비조합원 대상 사업 비중을 50% 이하로 관행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조합원과 실질적 서비스 이용자 간의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으며, 비조합원 또한 조합의 수익에 기여하고 세제 혜택의 간접 수혜자가 되는 현상은 애초에 조세특례의 목적이 조합원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에 있다는 점과 괴리가 발생하는 지점임

□ 조합법인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과 세제 감면 사이의 정합성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협동조합은 공익법인과 달리 전체 사회에 대한 공익 실현보다는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증진을 일차적 목표로 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제도는 조합 전체 사업에서 발생한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저율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해 일반 법인과 동일한 세율로 과세되는 반면, 조합법인은 더욱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과세특례의 정책 정당성은 조합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의 수준과 조세지출 규모 간의 균형 속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현행처럼 광범위한 세제지원을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구조는 그 설득력이 약화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의 지속가능성과 제도 유지의 타당성은 보다 정교한 기준과 성과 측정 틀을 통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조합의 공익적 성격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세제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성과에 기반한 차등 지원, 투명한 회계 분리, 실적 중심의 환원 요건 도입 등과 같은 보완 장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조합법인의 세제 우대가 명확한 공익성과 연결되고 있다는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표 Ⅲ-3〉 조합법인과 공익법인의 과세 구조 및 관련 제도 비교

구분	조합법인	공익법인
과세대상	결산상 당기순이익에서 일부 조정	수익사업만 과세
적용세율	20억원 이하 9%, 초과 12%	일반 법인세율과 동일하게 10~25% 적용
공익성 요건	설립 목적으로 간주하고 명시적 요건은 없음	「공익법인법」상 요건으로 엄격하게 규정
회계분리 의무	고유사업과 수익사업의 회계 구분이 불완전	수익사업 별도 회계 기장 의무가 있음
사후관리 장치	실적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의무, 성과 평가 등 존재

자료: 저자 작성

4. 지원 수단의 타당성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는 ‘당기순이익 기준 과세’와 ‘저율 과세 체계’를 핵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조합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행정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제도임
- 구체적으로는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일부 세무조정 항목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20억원 이하에는 9%, 초과분에 대해서는 12%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채택되어 있음

- 일반 법인세 과세방식에서는 손금불산입·익금산입 항목들이 복잡하게 적용되지만, 조합법인의 경우에는 회계상 이익에 유사한 지표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단순한 방식으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음
 - 이러한 방식은 조합법인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세무조정 관련 비용 부담을 경감해 주는 취지임
 - 실제로 1960~1970년대 도입 당시에는 가장 능력이 부족한 영세 협동조합을 위한 특례라는 명분이 있었고, 1998년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 조합법인들이 복잡한 세무조정 없이 단일세율(당시 12%)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조세행정상 편의를 고려한 측면이었음
- 그러나 당기순이익 과세방식이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최적의 지원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 현행 제도는 조합의 당기순이익 전체에 대해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로, 조합원 이용 실적이나 조합 내 자금 운용 방식과 무관하게 세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음
 - 반면 해외 주요국은 조합원 거래 실적에 따른 배당(이용고배당)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경우에만 조세 감면이 발생하도록 함
 - 예를 들어 미국은 일반법인과 동일한 과세체계를 유지하되, 조합원이 이용한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배당할 경우 해당 배당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조합원 개인에게 과세하는 단일과세방식을 취함
 - 캐나다, 영국 등 OECD 회원국 중 다수의 국가들도 유사하게 조합원과의 거래로 발생한 소득은 법인 차원에서 비과세 처리하고 조합원 소득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협동조합 지원 효과를 조합원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 손금인정을 두지 않고, 법인 단계에서 전체 순이익에 대해 낮은 세율만 적용하는 간접적인 방식에 머물고 있는 상황임
 - 결과적으로 조세지원이 조합원 개인에게까지 귀속되지 않고 조합 자체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며, 조세지출의 목표와 수단 간의 정합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제도의 간소성과 효율성을 기대했던 당기순이익 과세체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복잡해지고 있으며,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
 - 1998년 도입 당시에는 세무조정 항목이 최소화되었으나 과세형평을 이유로 점차 항목이 확대되었음
 - 2000년 기부금과 접대비 항목이 추가되었고, 2012년에는 퇴직급여충당금 등 6개 항목, 2016년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포함되는 등 현재는 9개 주요 항목에서 일반법인과 동일한 수준의 세무조정을 요구받고 있음
 - 특히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2013년 세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 세무조정이 도입되면서 단순과세 체계로서의 장점이 사실상 소멸되었다는 지적도 있음
 - 즉 당초 간이과세 제도로서의 납세협력비용 절감 효과는 줄어들었으며, 이는 제도 설계 의도와 실제 운용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줌

- 한편 일반법인과 다른 과세방식(세무조정 생략)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결손금 및 기부금 공제 제한 문제가 지적됨
 - 현행 제도하에서 조합법인은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이는 조합이 한 해 큰 손실을 입더라도 이후 흑자와 상계하지 못하므로 경기 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갖게 됨
 - 일반법인의 경우 과거 결손을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세제상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으나, 조합법인은 해당 연도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되기 때문에 누적적자에 대한 세제 상환 장치가 없음
 - 또한 조합법인은 기부금에 대해서도 손금산입 한도 초과분의 이월공제가 배제되어 있어 공익 목적의 기부를 많이 할수록 조합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역진적 구조가 나타남
 - 세무조정의 생략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가 오히려 기부 등 공익행위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일부 항목은 유보금 환입 시 중복 과세 문제도 야기함
 - 결국 현행 과세특례는 조합법인에 일괄적인 감세 혜택을 부여하는 동시에, 결손금 처리 제한과 기부활동 페널티 같은 숨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음

-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해외 국가는 조합원 이용 실적에 기반한 배당만을

세제상 비용으로 인정하여 조합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협동조합도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되, 조합원 실적에 따른 배당(Patronage Dividend)은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조합 단계에서 과세를 피하고 조합원이 수령할 때 과세가 발생하는 단일과세(one-tier) 구조를 구현하고 있고, 비조합원 거래나 자본배당에 대해서는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함
- 캐나다도 일반 법인세 체계를 유지하면서 조합원에게 실적 배당을 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음
 - 조합원은 해당 배당을 과세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일정 금액 초과 시 원천징수가 적용됨. 별도의 세율 우대는 없으나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감면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영국은 ‘Mutual Trading’ 원칙에 따라 조합원 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비조합원 거래는 일반 법인세율로 과세함
 - 조합원이 수령하는 실적 배당은 과세되지 않으며, 출자금 이자나 기타 이자소득은 과세됨. 면세 혜택은 조합의 조직 형태보다는 실질적인 운영 방식(조합원 중심 거래 구조)에 따라 좌우됨
- 일본은 한국과 유사하게 조합법인에 대해 낮은 법인세율(15~19%)을 적용하고 일부 간소화된 세제혜택을 제공하지만, 중요한 차이로는 조합원 실적에 기반한 배당(사업분량 배당, 노동분량 배당)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음
 - 즉 일본은 배당이 실제 조합원에게 귀속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구조이며,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실익과 세제지원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음
 -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배당은 소비자의 경우 비과세,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됨. 출자금 이자 등은 일반 금융소득으로 과세되며, 비조합원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은 과세대상에 포함됨
- 정리하면 미국·캐나다·일본 등은 조합원 실적에 기반한 배당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수혜자인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반면, 한국은 전체 순이익에 대해 저율로 과세하는 간접적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 영국은 조합원 거래 수익을 원천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질적 면세 구조를 취하고 있음
- 이러한 해외 사례는 우리나라 조합법인 세제 지원 체계가 실질 수혜자인 조합원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향후 정책 설계에 있어 조합원 귀속 기반의 과세체계 전환 검토가 필요한 근거로 기능할 수 있음

〈표 III-4〉 주요국 협동조합 과세체계 비교

국가	조합원 실적 기반 배당 손금 인정	법인세 과세 방식	조합원 과세 방식	비조합원 거래 과세
미국	○	일반법인과 동일하나 이용실적 배당은 손금 인정	배당 수령 시 개인과세(one-tier)	일반 법인세 적용
캐나다	○	일반법인과 동일, 이용실적 배당 손금 인정+원천징수	배당은 개인 과세 대상, 일정 금액 초과 시 원천징수	일반 법인세 적용
영국	△ (조합원 거래는 면세)	‘Mutual Trading’ 원칙하 조합원 거래는 비과세	실적 배당은 비과세, 출자금 이자 등은 과세	일반 법인세 적용
일본	○	저율과세(15~19%) + 실적 배당 손금 인정	소비자 배당 비과세, 사업자 배당은 과세	과세대상 포함
한국	×	전체 당기순이익에 대해 저율 과세 (9~12%)	조합원 과세 없음 (간접적 혜택 구조)	동일 적용

자료: 미국: IRS Subchapter T(Patronage Dividend)

캐나다: CRA Patronage Allowance Rules

영국: HMRC Mutual Trading Guidance

일본: 일본 세제 해설 자료 및 JA(Japan Agricultural Cooperatives) 조합 규정

- 이를 바탕으로 향후 조합법인 과세특례 제도의 개선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실질적 수혜자인 조합원에게 세제 혜택이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과세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조세지원이 조합이라는 조직을 거쳐 간접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조합원 개인이 체감하는 혜택이 희박할 수 있으며, 이는 제도의 정책적 정당성과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특히 조합 전체 이익에 대한 포괄적 저율 과세 방식보다는 조합원이 실질적으

- 로 이용한 거래 실적에 기반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고, 이 배당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이 보다 정교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음
- 이와 같은 방식은 실질적으로 조합 활동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조세혜택이 직접 귀속되도록 하여, 제도의 수혜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이환웅·강동익·전주용(2022)에서도 이용고배당에 대한 손금산입이 조합원의 이익과 과세체계를 일치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합에 대한 지원 정책이 본래의 목적에 더욱 부합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평가함
- 이러한 제안은 조세지원이 조직 중심이 아닌 조합원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는 방향성과 맥락을 같이함
-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는 궁극적으로 조합원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제도 운영 방식 또한 그 목적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이용고배당 손금 인정 제도 도입, 일정 수준의 사회공헌비 지출요건 설정, 회계 분리 기반의 과세방식 도입 등은 정책목표와 제도수단 간의 정합성을 높이는 실질적 개선방안이 될 수 있음

5. 지원 내용과 방식의 적절성

- 현행 조합법인 과세특례는 조합의 규모에 따라 혜택의 크기가 달라지는 구조적 특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규모가 큰 조합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제혜택을 누리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구조는 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소 괴리가 있을 수 있어, 정책적 정당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처음에는 9% 단일세율로 시작된 조합법인 과세특례는 모든 조합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이익 규모가 클수록 감면액이 커지는 효과를 발생시켰음
 - 예를 들어 연간 수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일부 대형 중앙회나 경제사업법인의 경우 일반 법인세 최고세율(25%) 대비 낮은 특례세율(9~12%)을 적용받아 수백억원 단위의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
- 반면 연간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영세 조합의 경우에는 일반 중소기업과 비교할 때 실효세율 차이가 1%p 내외에 불과하여 체감 혜택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지적도 있음

- 결과적으로 감면 혜택이 조합의 재무 규모에 비례하여 커지는 구조는 조세상 역진성 문제를 야기하며,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 2015년 이후 과세표준 20억원 초과분에 대해 12%의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구조를 도입하여 일부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일반법인 대비 낮은 세율로 인한 구조적 혜택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과세표준 2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9%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담 경감 수준은 상당하다고 평가됨
 -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거나, 일정 기준 이상 자산 또는 매출을 보유한 조합은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등 정책 목적과 수단 간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영세 조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세제 혜택이 대형 조합에 불필요하게 집중되는 구조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 조합법인 과세특례는 유사한 지원제도인 공익법인 및 중소기업 세제와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 여지가 존재함
- 공익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되나, 그 소득의 80% 이상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면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사실상 면세되는 제도가 있음
 - 즉 공익법인은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엄격한 공익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용도 제한과 사후관리도 받음
 - 반면 협동조합은 공익법인 만큼의 직접적 공익목적 요건이 없음에도 포괄적인 낮은 세율 혜택을 받음
 - 조합원 복리 증진이 공익성과 연결된다고는 하나, 불특정 다수를 위한 봉사나 자선과는 구별되는 부분이 있어 세제혜택의 문턱이 공익법인 대비 낮은 편임
 - 한편 중소기업은 일반 법인세 체계 내에서 소규모에 대해 완화된 세율을 적용받고 일부 세액감면을 받을 뿐, 협동조합처럼 회계상 이익만을 과세하거나 추가 감면을 받지 못함

- 규모가 커지면 중소기업이더라도 곧바로 일반세율(22~25%)을 적용받아 부담이 증가하는데, 협동조합은 규모가 커져도 특례세율 적용이 유지되어 동일한 소득 규모에서 중소기업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불공정이 발생함
- 이는 같은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조직 형태에 따른 조세불균형으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경쟁업체가 협동조합 형태일 경우 세후이익에서 밀릴 수 있는 불리함이 있음
- 실제로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업체(예: 하나로마트, 수협마트, 생협 등)가 같은 시장에서 영리기업과 경쟁하는 사례가 많은데, 세후 순이익을 투자 여력이나 가격 인하에 활용할 수 있어 조세상 우위가 경쟁 우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공익법인 수준의 공익성 요건을 일부 도입하여 세제혜택의 책임성을 높이고, 대형 조합은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조합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목적사업(공익적·회원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한해서만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 사업이익은 통상세율을 적용하는 식으로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표 III-5〉 비교대상 법인과의 세제혜택 비교

항목	협동조합법인	공익법인	중소기업
기본세율	9~12%	10~25%	10~25%
공익사용 요건	없음	수익의 80% 이상 사용 조건	없음
회계분리 의무	미비	고유·수익사업 회계분리 의무	일반적 회계원칙 적용
세제감면 요건	협동조합 여부	공익 목적 성과 기준	규모 기준
사후 공시·평가	없음 또는 미흡	국세청 공시 의무, 성과평가	미흡

자료: 저자 작성

- 조합법인은 다기능 복합조직으로서 다양한 사업을 하나의 조직 내에서 수행하고 있어 사업 영역 간 회계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도의 남용 소지가 존재함
- 예를 들어 과거 농협중앙회는 금융·경제·교육 등 여러 기능을 하나의 법인에서

통합 운영하면서 전체 이익에 대해 단일세율을 적용받아 금융부문 이익까지 특례세율의 혜택을 누린 사례가 있음

- 이후 2012년 「농협법」 개정을 통해 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이 분리되면서 일부 해소되었으나 지역 단위의 조합이나 기타 협동조합에서도 유사한 문제 소지가 남아 있음

○ 현재 법령상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간 손익구분 회계는 조합 내부 기준에 의존하고 있어, 세무 목적의 공식적 회계분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이로 인해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도 목적사업 이익으로 통합되어 감면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함

○ 향후 제도 개선 시 일정 기준 이상의 조합에 대해 사업 유형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사업 부문별 법인 분리를 유도하거나 미분리 시에도 과세상 소득 분리를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다만 이는 행정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 자산규모 이상 조합에 한정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세제감면 혜택이 조합원 복지 및 공익적 지출로 실질적으로 환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또한 제도의 적절성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임

○ 조세지출의 정당성은 감면 혜택이 원래 정책대상에 귀속되는지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며, 현재는 조합 차원의 잉여금 증가로 이어질 뿐 조합원 개개인의 체감 복지로 직접 귀속되는 구조가 뚜렷하지 않다는 비판이 존재함

○ 예컨대 조합원 배당, 교육비, 복지기금, 지역사회 기여금 등으로의 환원율은 조합마다 상이하며, 일부 대형 조합은 감면 세액 대비 사회공헌비율이 20~40%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 신탁의 경우 2021년 기준 법인세 감면액 대비 사회공헌활동 지출 비율은 77.9%로, 목표로 제시한 100%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수치는 조세지출이 공익적 성과로 전환되지 않고 내부 유보금 증가나 자산 확대에 귀결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함

○ 결과적으로 조세특례가 조합의 공익성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 측정 체계가 부재한 상황은 제도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향후에는 감면액 대비 조합원 환원 지표(예: 복지비, 배당비율, 교육지원비 등)의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거나 공익기여도에 따른 감면 세율 차등 적용 등의 설계를 검토해 볼 수 있음
 - 세제혜택이 목적 실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함에 따라 지원 강도를 조정하는 구조는 조세지출의 성과책임성과 수혜정당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종합적으로 현행 조합법인 과세특례 제도는 대형 조합에 대한 역진적 혜택, 공익법인 및 중소기업과의 과세 형평 문제, 내부사업 간 회계분리 미비, 그리고 세제감면의 실질 환원 부족 등 여러 측면에서 정책 목적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음
- 우선 감면 혜택이 조합의 규모에 비례해 증가하는 구조는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조합보다, 이미 충분한 재무적 기반을 갖춘 대형 조합에 혜택이 집중되는 역진성 문제를 유발하고 있음
 - 이는 조세지원 제도의 기본 전제인 수요 기반 지원 원칙과 어긋날 수 있으며,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 아울러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이나 중소기업에 비해 협동조합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 요건과 우월한 세율 혜택을 받고 있어 과세 형평성의 훼손이라는 측면에서도 제도 정비가 요구됨
 - 특히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일반 기업과의 비교 시 세제상의 불균형은 경쟁 환경 왜곡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함
 - 또한 조합 내부의 다양한 사업 영역 간 회계가 충분히 분리되지 않을 경우 조세감면의 범위가 본래 목적을 넘어선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음
 - 이는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이며, 투명한 회계기준과 과세 범위의 명확화를 통해 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조합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이 실제로 조합원 개인의 복지 향상이나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부족한 현실임
 - 감면된 세액이 조합의 내부 유보금이나 자산 확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실익이나 공익 기여로 환원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부족함
 - 따라서 향후 과세특례 제도의 보완 방향은 단순히 세율 조정 수준에 그치지보

다는 감면 혜택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환원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성과 기반 구조로의 전환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대형 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의 단계적 축소 또는 적용 배제, 혹은 차등 세율 확대를 통한 역진성 완화
 - 공익적 목적에 대한 세제 혜택의 연계 요건 강화, 공익활동비 지출, 조합원 환원 실적 등을 기준으로 감면의 조건화
 -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간 회계의 명확한 분리 및 법인 단위 분리 또는 분리 과세의 제도화
 - 조세감면액 대비 환원 실적 공개 및 성과 기반 평가제 도입을 통한 조세지출의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
- 이러한 개선 방향은 조세특례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게 설계되고 운용되도록 함으로써 조세지원의 타당성과 공정성,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다른 조합법인 지원제도와 중복성

- 일반적으로 조합법인 과세특례는 타 제도 간의 중복을 일정 부분 방지하고 있으며, 다른 재정지원과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이 존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는 협동조합 고유기능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일반 기업 대상의 타 조세특례와는 수혜 구조가 구분됨
 - 세법상 명확한 중복 차단 규정이 존재하여, 구조적으로 동일 항목에 복수의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사례는 원천적으로 제한됨
 - 또한 협동조합은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다양한 정책적 기능을 현장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이는 조세특례의 정책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함
 - 예를 들어 농협은 전국 단위의 농산물 유통망(하나로마트), 농기자재 공동구매, 농업정책자금 집행 등 농정의 일선 전달체계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수협은 위판장 및 어업자재 공급, 어촌복지시설 운영, 어업인 교육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며, 어촌 고령화 및 인력난에 대응하는 정부의 해양정책을 현장에서 보완하고 있음

- 산림조합은 임업인 대상 산림기술지도, 병해충 방제, 산림경영계획 수립 등 산림관리 현장 업무를 대신 수행하며, 산림청의 위탁 업무도 다수 수행 중임
- 신협 및 새마을금고는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소액대출, 긴급생활자금 공급, 복지공제상품 운영 등을 통해 서민금융의 말단망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의 금융포용 정책과 연계되어 있음

- 다만 2024년 예산을 보면 조세특례 대상인 조합법인 등에 대한 유사 재정사업이 6건 정도로 파악되며, 일부 사업에는 조합법인 과세특례와 중복성이 존재함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지원과 지역농업발전사업, 해양수산부의 수협중앙회 지도사업과 회원지원자금 및 공제사업,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사업,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지원 등임
 -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농업발전사업, 해양수산부의 수협중앙회 지도사업,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사업에 일부 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III-6〉 다른 재정사업과의 중복성 평가

예산사업명	부처	주요 내용	중복성 평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경제·신용 부문 분리 위한 자본금 지원 및 금융채권 이자 보전	「조특법」 제121조의23에 따라 농협 분할·이전 등 구조개편에 세제특례가 제공되지만, 조합원 복지와는 직접 관련이 적어 중복성은 낮음
지역농업 발전사업	농협중앙회 (농식품부, 지자체 일부 매칭)	조합 공동사업비 및 영농지도·교육·시설지원 등	지역농협의 공동사업(관로, 교육 등)을 재정으로 지원하며, 영농 기반 확대와 수익창출에 대해 세제와 재정이 동시에 작동하므로 기능적으로 중복성 존재함
수협중앙회 지도사업 지원	해양수산부	수산물 유통, 어민 교육, 수협 조직관리, 조합운영지도 등	「조특법」 제121조의25에 따른 과세특례와 병행되며, 중앙회 기능 정비에 대한 세제 및 재정 지원이 병행되어 중복 가능성 존재
회원지원자금 및 공제사업 출연	수협중앙회	조합원 출자금 지원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제제도 운영	수협 공제사업·출자금 지원 등 조합원 대상 재정 지원, 세제혜택은 법인단위(수협)에 집중되어 있어, 직접적 과세특례와는 수혜주체가 달라 중복성 낮음

<표 III-6>의 계속

예산사업명	부처	주요 내용	중복성 평가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정책 지원, 공동사업 보조, 홍보·교육 등	정책개발·홍보·교육 중심의 예산이며,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출자·소득공제와 병행되어, 협동조합 활성화라는 동일 정책 목적에 대해 세제와 재정 양자 작동으로 중복성이 존재하나 예산 규모는 작음
새마을금고 건전성 지도감독	행정안전부	감독기준 수립, 연체율 관리, 시스템 고도화 등 건전성 강화	직접적 재정 지원이 아닌 감독행정 목적 예산으로 실질 중복성 거의 없음

자료: 저자 작성

7. 정리 및 제언

- 조합법인 과세특례는 즉시 폐지보다는 일정 조건을 전제로 신중하게 연장을 검토
하되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는 그동안 일정한 정책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일부
제도적 한계와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제도를 즉시 폐지하기보다는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신중하게 연장을
검토하면서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구체적으로는 특례 연장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방향의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세율 구조 개선: 현행 단일세율 방식에서 벗어나 조합의 이익 규모에 따라 세
율을 더욱 차등 적용하는 누진 구조를 도입하여, 소규모 조합에는 현행 세율
유지, 대형 조합에는 상향된 세율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음
 - 공익성 요건 부여: 조합의 세제 혜택이 조합원 및 지역사회로 실질적으로 환
원되도록, 일정 수준의 공익활동 실적을 특례 적용의 요건으로 설정
 - 대형 조합 특례 축소: 일정 자산 또는 이익 규모를 초과하는 대형 조합에 대해
특례 적용을 제한하거나 감면 폭을 축소함으로써 역진적 구조를 완화

- 회계분리 및 투명성 제고: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간 회계 구분을 명확히 하고, 사업별 손익 계산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과세대상 소득의 투명성을 제고
 - 이러한 개선 방향은 조합법인의 공익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의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특례의 지속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또한 향후 제도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개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조세특례의 현행 유지만으로는 제도의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전제된 한시적 연장 및 제도 종료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한 정책 대응이 필요함
 - 따라서 향후 다음과 같은 방향의 시나리오를 검토해 볼 수 있음
 - 제도 개선을 전제로 한 한시적 연장
 - 개선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 종료
 - 이러한 방식은 협동조합의 고유 기능과 공익적 역할을 존중하면서도, 조세특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IV. 효과성 분석



IV. 효과성 분석

1. 서론

- 동 제도는 일반 영리법인과는 다른 조직 목적을 가진 조합법인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기능 수행을 촉진하고자 도입되었으며, 이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 제도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함
 - 조합법인은 조합원 간 상호이익과 공동의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비영리적 특성을 가지며, 민간 부문 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
 - 이에 따라 조세특례(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낮춤으로써 조합법인의 운영 안정성과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내 상생과 협업 기반의 경제 구조를 확산시키는 것이 제도적 목적임
 - 본 실증 분석은 이러한 제도 변화가 조합법인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함
 - 제도 개편 이후에도 조합법인의 성과가 유지되거나 개선되었다면, 해당 조세 특례는 지속가능성과 정책효과 측면에서 유의미한 제도로 평가 가능
 - 반대로 조합법인이 과세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수익 축소 등의 반응을 보였다면, 이는 조세특례가 왜곡된 유인을 제공했음을 의미할 수 있음
 - 이 경우 조세특례에 따른 성과 향상은 편익, 세 부담 증가 또는 행태 왜곡은 비용으로 간주 가능
 - 조합법인은 민간 부문 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으며,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운영 안정성과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정책적 목적임
 - 다만 행정자료를 통해 조합법인의 복리 증진을 측정하는 변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합법인의 성장성(수입) 및 수익성(당기순이익) 변수를 결과변수로 활용
- 법인세 과세특례의 실효성과 정책 목적 부합 여부에 대해 선행연구가 존재하지만, 본 연구는 방법론 및 자료 측면에서 차별 존재
 - 전병목·류덕현(2017)은 조세특례제도의 정책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해 법령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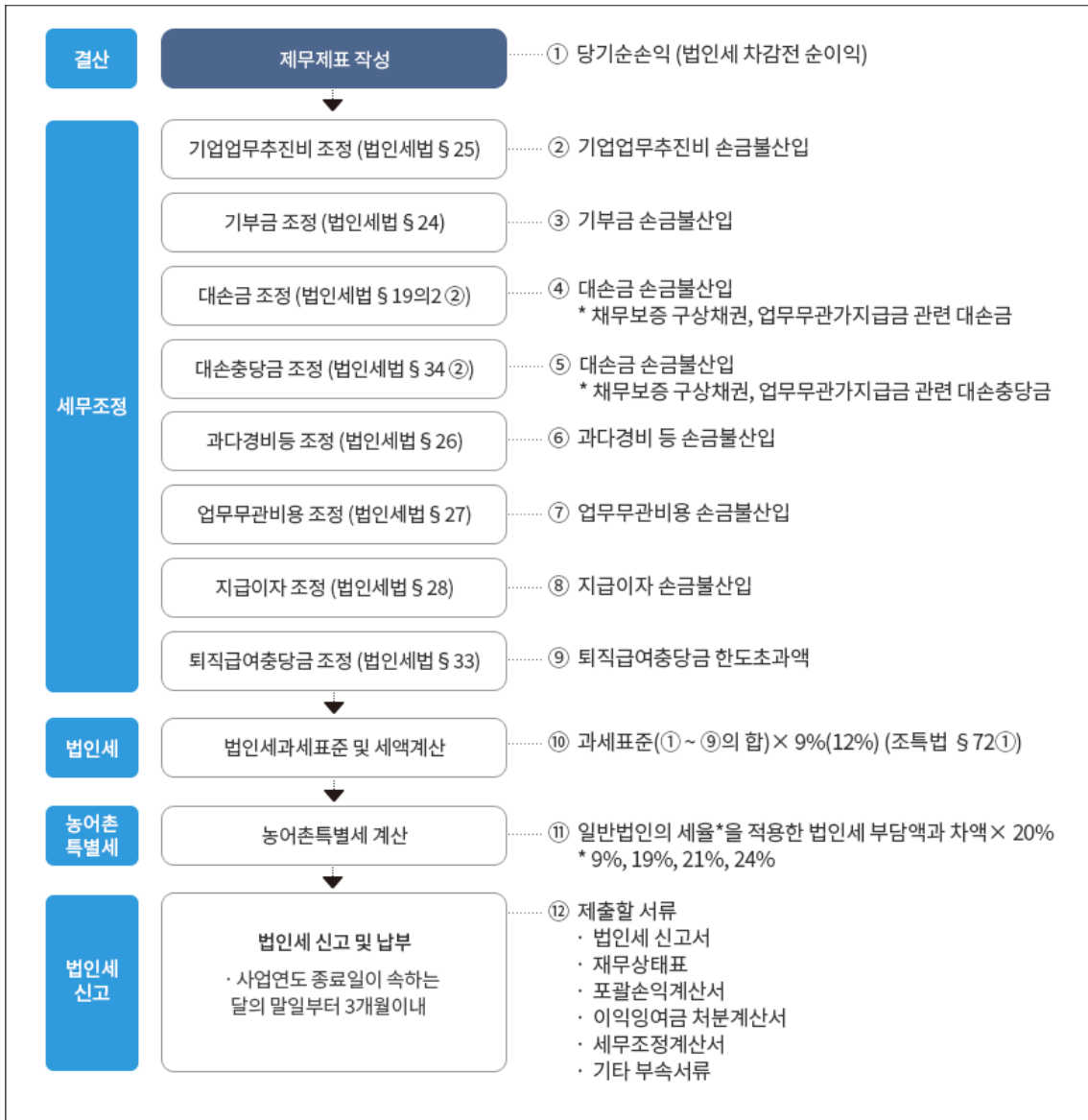
- 외국 사례 비교, 패널자료 분석, 산업연관 분석 등을 통해 다면적 평가 수행
- 조세특례가 공익성보다는 조합원 이익 귀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세계
혜택 수준이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
- 순이익률 감소 등 실증결과를 근거로 과세체계 전환 및 세무조정 확대 등
개선 방향 제시
- 전병목·권성준(2020)은 세율 인상이 성과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정책 효
과와 형평성 간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히고, 조합원 직접 지원, 대규모
조합 차등 과세 등 대안 제안
- 이환용·강동익·전주용(2022)은 DID 분석과 함께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를 병행
함으로써 정책 효과의 전달 구조를 정밀 추적하여 세율 인상 이후 성과 변화
미미, 조합원 체감 효과 낮음을 밝힘
- 본 연구는 제도적 불연속성 기반 회귀단절모형(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RDD)을 도입하여 보다 정책효과를 정교하게 식별하고자 함
 - 2015년 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과세표준 20억원 초과분 세율 인상(9 → 12%)
을 활용하여, RDD를 적용함으로써 국지 효과를 식별
 - 과세표준 전후의 종속변수의 변동을 활용하여 식별 타당성 제고

2. 자료 및 식별전략

- 조합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하므로 결산조정 및 세무조정을 거쳐 법인세 과표 및
세액계산이 이루어지나 「법인세법」상의 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
에 따라 행정 자료 구축³²⁾
- 법인세액 산정 과정과 이에 필요한 서식을 [그림 IV-1]과 <표 IV-1>에서 설명
하고 있음에 따라 국세청의 협조로 각 서식 내 조합법인 관련 정보를 제공받음

32) 「법인세법」 제97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그림 IV-1] 당기순이익과세특례 적용 법인에 대한 신고안내



자료: 국세청, 「비영리법인 신고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60&cntntsId=7986>, 검색일자: 2025. 6. 6.

<표 IV-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조합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 제출 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50호 갑, 을]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2호]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

<표 IV-1>의 계속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을)[별지 제10호 갑, 을]
- 표준재무상태표[별지 3호2(1), (3)]
- 합계표준재무상태표[별지 3호의2(2), (4)]
- 표준손익계산서[별지 3호3(1), (2)]
- 부속명세서[별지 3호3(3)]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3 (4)]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
 - * 기부금조정명세서는 전자신고 시 제출 제외
- 기업업무추진비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23호(갑),(을)]
 - * 기업업무추진비조정명세서(갑),(을)은 전자신고 시 제출 제외
- 주요계정명세서 (갑), (을)[별지 제47호(갑),(을)] 등

주: 특정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과세표준 등의 신고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 그 외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자료: 국세청, 「비영리법인 신고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60&cntntsId=7986>, 검색일자: 2024. 12. 24.

□ 2015년 신고법인 기준으로 수혜기업 전수자료 추출

- 분석대상은 2015년 신고된 조세특례 수혜 조합법인 전수

□ 제도 변화 배경을 활용하여 식별 전략 도출이 가능

- 2015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개정에 따라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가 기존의 단일세율(9%) 체계에서 이중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
 - 구체적으로는 과세표준이 20억원 이하인 구간에는 종전대로 9%를 적용하되, 2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1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변경
 - 이와 같은 변화는 세율 자체의 인상뿐만 아니라 경계지점(과세표준 20억원)을 기준으로 조합법인의 세 부담 구조를 비선형적으로 변화시키는 제도적 충격으로 기능
 - 본 연구는 2015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개정으로 인해 도입된 조합법인 대상 법인세 이중 누진세율 구조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

- 이러한 제도 변화가 조합법인의 경영성과(예: 수입금액, 순이익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
 - 과세표준 대비 임계점을 중심으로 한 러닝 변수(running variable)를 생성하여, 각 기업의 과세표준이 20억원보다 얼마나 작은지 또는 큰지를 연속 변수로 활용

□ 실증분석 방법 소개

- 과세표준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12%의 세율이 새롭게 적용된 제도 개편을 Sharp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RDD)으로 식별
 - 본 제도의 구조적 특징인 20억원 과세표준 기준의 누진세율 도입은 임계값 기반의 불연속적 세율 변화를 유발
 - 이에 따라 조합법인들 사이에서 과세표준(tax base)을 기준으로 세 부담이 급격히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과세표준 20억원 전후의 법인들 간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할 수 있게 해줌
 - 따라서 다음과 같이 2015년 조합법인 중 과세표준을 러닝 변수(running variable)로 하고 20억원을 임계값으로 설정한 단면 회귀불연속분석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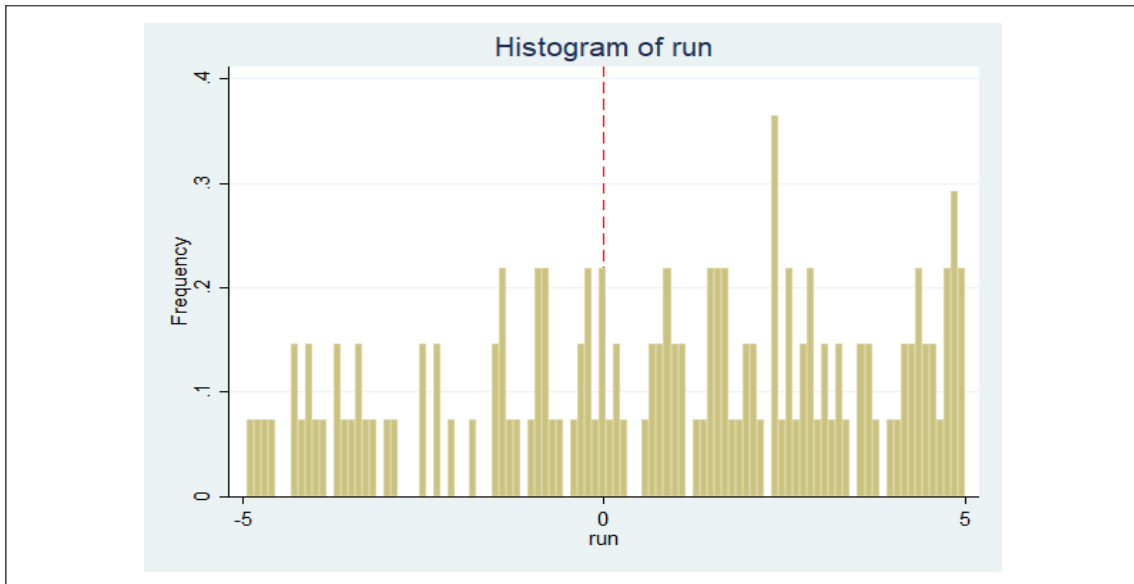
$$Y_i = \alpha + \tau \cdot 1[TaxBase_i > 20] + f(TaxBase_i - 20) + \varepsilon_i$$

- $1[TaxBase_i > 20]$: 과세표준이 20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 $f(TaxBase_i - 20)$: 과세표준에 대한 이차 다항식 함수
- τ : 단절효과(treatment effect at cutoff), 즉 세율 상향 조정의 경계효과
- 주요 종속 변수로는 수입금액과 당기순이익이 포함되어 있으며, 분석을 위해 각각 로그 변환하여 사용
- 또한 산업분류와 지역(소재지) 정보를 이용해 회귀분석 시 업종 및 지역 더미변수로 활용
- 실증분석에서는 5억원을 대역폭(bandwidth)으로 선택하고, 양측 추정(robust) 기법을 적용해 신뢰도 높은 추정을 수행하며, 그래프를 통해 경계 근처의 데이터 분포 및 평균값의 불연속성을 시각적으로 확인

3. 결과

- RDD 모형 추정 결과 법인세율 인상은 조합법인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일부 악 영향을 주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RDD 모형을 사용하는 기본 가정은 잘 충족되어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 절단점 근처에 충분한 관측치가 있어야 RDD 추정의 신뢰도가 높는데, 그래프에선 '0' 주변에도 관측치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 만약 절단점을 중심으로 러닝 변수 값이 급격히 변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분포하면 치팅(manipulation)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으나, 이 그래프는 비교적 균등한 분포를 보임
 - 예를 들어 조합법인들이 세율 구간을 회피하기 위해 과세표준을 인위적으로 조정했다면 20억원 직전 구간에 기업이 몰리는 분포 왜곡이 나타날 수 있음
 - 이 외에도 McCrary 밀도 검정과 커널 밀도 함수 그래프를 통해 이를 확인한 결과 임계점 전후의 과세표준 분포에 유의한 불연속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RDD 분석의 전제가 충족됨을 시사함(p-value > 0.3 수준)

[그림 IV-2] running variable 히스토그램



자료: 저자 작성

- RDD 추정 주요 결과는 <표 IV-2>에 존재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한 해석은 RDD 그래프와 함께 설명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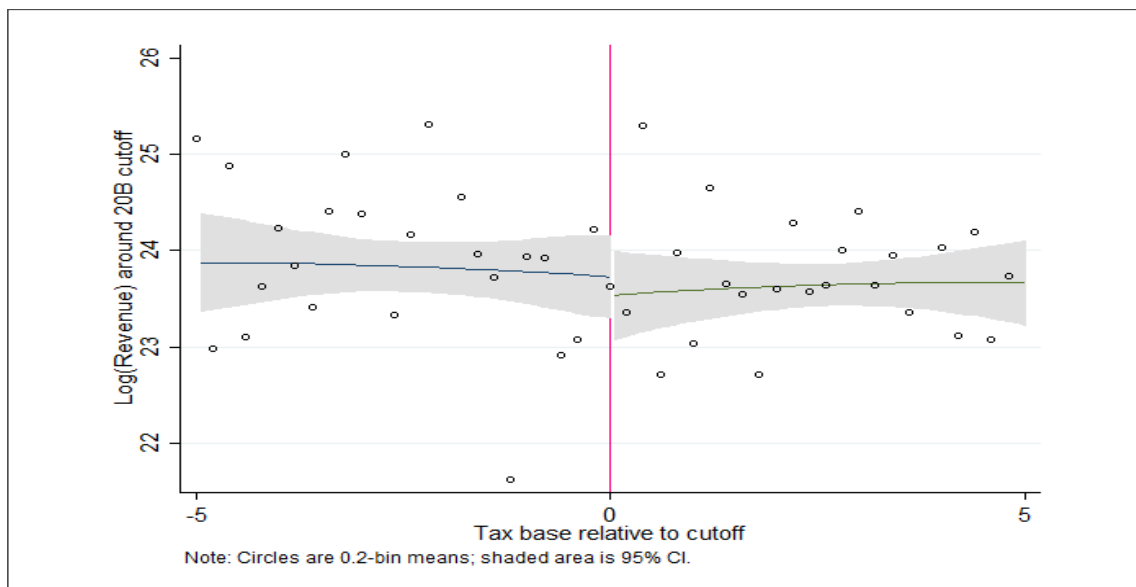
<표 IV-2> RDD 추정 결과

종속 변수	로그(수입금액)	로그(순이익)
추정 계수	-0.151	-0.023
표준오차(Robust)	(0.222)	(0.059)
유의확률(p-value)	0.496	0.701
95% 신뢰구간	[-0.587, 0.284]	[-0.137, 0.092]
밴드위스(h)	0.5	0.5
다항식 차수(p)	2	2
관측치 수	3,668	3,668
통제변수	업종 더미(9개), 지역 더미(17개) 포함	

자료: 저자 작성

- 과세표준이 20억원을 초과하여 법인세율이 9%에서 12%로 증가한 경우 기업의 수입금액은 약 14.0% 감소($\exp(-0.151)-1$)하나, p값이 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파란 선은 과세표준이 임계점 이하(20억원 미만)인 구간의 밀도, 빨간 선은 임계점 이상 구간의 밀도를 나타냄

[그림 IV-3] RDD 추정 결과(종속변수: Log(수입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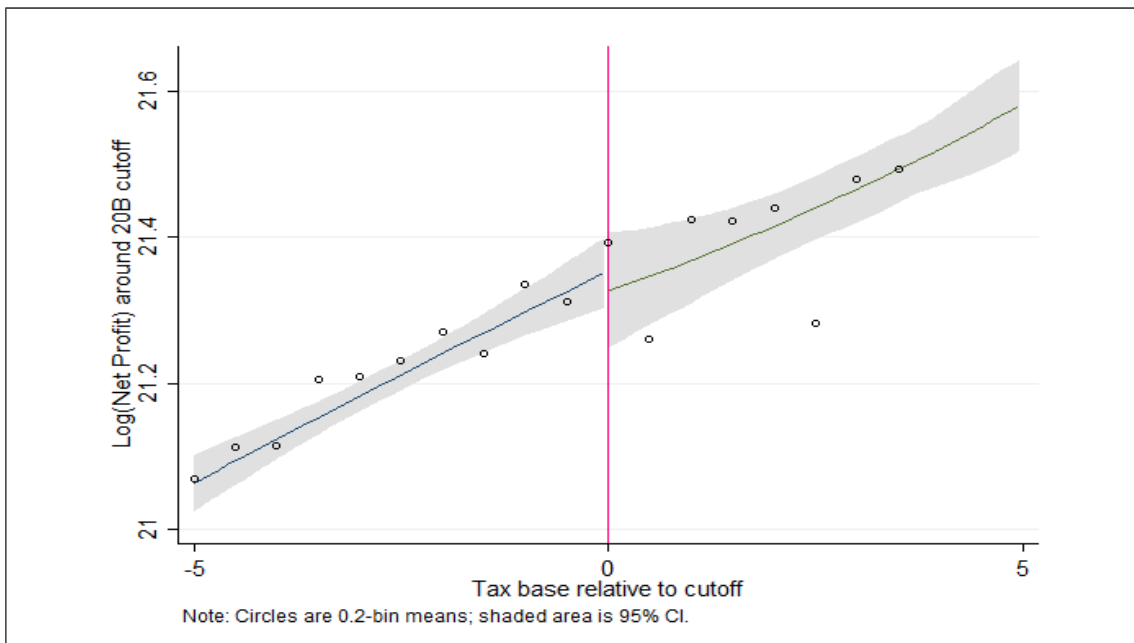


주: 대역폭은 5억원이며, 삼각형 커널 가중치를 적용하였고, 음영 표시는 95% 신뢰구간을 의미함. 점들은 데이터를 구간별(bin) 평균한 값이며, 실선은 임계점 좌우 각각에 적합된 국지적 2차 회귀 추세선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 Log(수입금액)에 대한 분석 결과 임계값을 기준으로 한 처리효과는 -0.151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p=0.496$)
- 이는 과세표준이 20억원을 초과한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음(-)의 방향으로 수입금액이 감소하였지만, 95% 신뢰구간이 [-0.586, 0.284]로 넓어 처리효과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움
- 과세표준이 20억원을 초과하여 법인세율이 9%에서 12%로 증가한 경우 기업의 순이익 금액은 약 2.27%($\exp(-0.023)-1$) 감소하나, p 값이 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파란 선은 과세표준이 임계점 이하(20억원 미만)인 구간의 밀도, 빨간 선은 임계점 이상 구간의 밀도를 나타냄
- Log(순이익)에 대한 분석 결과 임계값을 기준으로 한 처리효과는 -0.022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p=0.701$)
- 이는 과세표준이 20억원을 초과한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음(-)의 방향으로 순이익금액이 감소하였지만, 95% 신뢰구간 [-0.137, 0.092]로 넓어 처리효과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움

[그림 IV-4] RDD 추정 결과(종속변수: Log(순이익))



주: 대역폭은 5억원이며, 삼각형 커널 가중치를 적용하였고, 음영 표시는 95% 신뢰구간을 의미함. 점들은 데이터를 구간별(bin) 평균한 값이며, 실선은 임계점 좌우 각각에 적합된 국지적 2차 회귀 추세선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 이러한 결과는 세율 인상이 존재하더라도 조합법인의 수입 및 순이익 수준에 당장의 비연속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조세 부담 변화가 단기적인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보여줌
- 전반적으로 20억원 임계점을 전후한 기업들의 재무성과 지표에서 뚜렷한 단절적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고, 95% 신뢰구간 역시 효과의 존재 여부에 대해 영(0)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를 보여줌

V. 결론 및 정책 제언



V. 결론 및 정책 제언

1. 분석 결과의 요약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근거하여, 농어민과 서민층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해당 특례는 협동조합의 이익 중 일정 부분을 저율로 과세하거나 간소화된 방식으로 과세함으로써 조합의 자율성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설계됨

- 그러나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실제로 정책 목표인 조합원 보호 및 공익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음
 - 정부는 2019년 기준 「조합법」 과세특례를 통해 약 3,597억원의 세수를 감면했으며, 이는 전체 법인세 감면 항목 중 7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함
 - 반면 감면 혜택이 조합원 개인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귀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는 다소 부족함
 - 세제 혜택이 오히려 조합 운영의 재무적 안정성 확보나 내부 자본 적립으로 우선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형 조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향후 조합법인 과세특례 제도의 개선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실질적 수혜자인 조합원에게 세제 혜택이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과세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조세지원이 조합이라는 조직을 거쳐 간접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조합원 개인이 체감하는 혜택이 희박할 수 있으며, 이는 제도의 정책적 정당성과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특히 조합 전체 이익에 대한 포괄적 저율 과세 방식보다는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이용한 거래 실적에 기반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고, 이 배당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이 보다 정교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음
 - 이와 같은 방식은 실질적으로 조합 활동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조세혜택이 직접 귀속되도록 하여, 제도의 수혜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2015년 조합법인 법인세 특례세율 개편은 정책 의도대로 대형 조합법인의 부담을 일부 늘리면서도 소형 조합법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목표를 비교적 무리 없이 달성한 것으로 판단
 - 조세특례 혜택의 차등화가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법인에 대해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조합법인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 세율 인상으로 추가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해졌음에도 중대형 조합법인의 재무성과 지표에는 부정적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정책은 세제 형평성과 기업 활력 간 균형을 비교적 잘 달성한 사례로 평가됨
 - 과세표준 분포에 특별한 왜곡이 나타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세율 경계를 회피하려는 납세행태의 왜곡(distortion) 역시 크지 않음
 - 세율 구간을 설정함에 따라 우려될 수 있는 임계점 근처의 행동 왜곡(예: 과세표준을 의도적으로 20억원 이하로 맞추려는 노력)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현재의 과세표준 구간 설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정책 효과의 지속성과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본 연구는 2015년 단년도 데이터를 통해 단기 효과를 평가하였으나 세율 변화가 투자, 사업 규모 조정 등 중장기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추가 연구가 요구됨

2. 정책 제언

- 조합법인에 대한 현행 과세특례는 농어민·서민 지원 수단으로 일정한 기능을 해왔지만, 공익성과 효율성의 한계를 고려할 때 조건부·한시적 연장이 바람직함
 -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공익 목적을 전제로 하나 실제 조합원의 실익 증가나 공익 기여로의 연결 고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 세제 혜택 용도에 대한 통제 수단이 미비하고, 조합원에게 배당해야 하는 유인체계가 없어 정책효과가 조합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한계 존재
 - 조세특례 혜택을 줄여도 조합법인의 매출지표는 크게 악화하지 않으면서도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됨
 - 효과성 분석에서 보듯 일정 과세표준 이상의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해 법인세율을 높여도 세수저항이 크지 않았으며, 수익성 및 성장성의 하락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 본 제도를 일몰 연장한 이후 조합법인의 주요 재무지표를 면밀하게 관찰 후 향후 여건 개선 시 점진적 폐지 추진 제안
- 제도 개선 방향으로 일반법인과 유사한 과세표준 산정 방식 도입, 이익 규모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 환원·사회공헌 의무화,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업별 회계분리 등이 있음
- 현행 세무조정사항 9개 이외 익금 산입 및 손금 불산입 항목 위주로 세무조정사항 추가 가능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19조의 2),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0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3조) 등 추가가능한 손금불산입 존재함
 - 다만 추가 세무조정에 따라 과세표준이 높아질 위험이 있어 조합법인이 기피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법인세법」 개정 시 이중으로 다른 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금액 익금산입, 기한 내 증빙 미제출 시 감면액 손금불산입 등 보다 특례에 맞는 형태(즉 공익 활동에 대한 사후 관리 요건)를 추가할 수 있겠으나, 이는 현실적 검토 필요
 - 조합법인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과세하되 공익목적사업의 경우 회계 분리하거나 준비금을 설정하는 방안도 가능
 -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회계상 별도로 분리하여 결산 및 신고하고,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시키는 것은 가능
 - 예를 들어 교육, 복지, 농어촌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은 공익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특례의 본래 목적에 더 부합할 것으로 판단함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법인세법」상 과세 소득에 대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당 금액을 비용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해 줌
- 다만 이는 공익 목적이 아니므로, 공익 목적으로 한정한 준비금을 설정할 경우 해당 준비금 손금 산입을 통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형태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도 가능함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김수환, 『협동조합 해외선진사례 및 도입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09.
- 김예은, 『협동조합 과세제도 연구: 법인소득 과세를 중심으로』, 연세대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 김완석·심태섭, 「협동조합 관련 조세지원제도 개정방안」, 『조세연구』, 제12권 제2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2, pp. 7~40.
- 문귀영, 『사업자협동조합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강남대 세무학과 박사학위 논문, 2020.
- 박준기, 「독일 협동조합 금융」, 『세계농업』, 제167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2014, pp. 1~15.
- 손원익·송은주·홍성열, 『협동조합 과세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 윤충식·장태희, 『조세특례제한법 해설과 실무』, 삼일인포마인, 2007.
- 이태정, 「협동조합에 대한 세제지원 연구」, 『세무회계연구』 제42호, 2014, pp. 19~36.
- 이환웅·강동익·전주용,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7)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 전병목·권성준,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IV)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 전병목·류덕현, 『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VI)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Caves, R. and B. Petersen, “Cooperatives’ Tax Advantages: Growth, Retained Earnings, and Equity Rotation,” *American Journal Agricultural Economics*, 68(2), 1986, pp. 207~213.
- Garcia, A.V., M. Bastida, and M.A.V. Tain, “Tax measures promoting cooperatives: a fiscal driver in the contex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European Research on Management and Economics*, 26(3), 2020, pp. 127~133.

OECD, *Corporate Tax Statistics 2024*, 2004.

Saz-Gil, I., Bretos, I., and Díaz-Foncela, M., “Cooperatives and Social Capital: A Narrative Literature Review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Sustainability*, 13, 2021, pp. 44~51.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 검색일자: 2025. 8. 17.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88&cntntsId=7751>, 검색일자: 2025. 7.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검색일자: 2025. 6. 24.

_____,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84%ED%91%9C%EC%84%9C%EC%8B%9D/\(%EC%A4%91%EC%86%8C%EA%B8%B0%EC%97%85%EA%B8%B0%EB%B3%B8%EB%B2%95%EC%8B%9C%ED%96%89%EB%A0%B9,%20%EB%B3%84%ED%91%9C1](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84%ED%91%9C%EC%84%9C%EC%8B%9D/(%EC%A4%91%EC%86%8C%EA%B8%B0%EC%97%85%EA%B8%B0%EB%B3%B8%EB%B2%95%EC%8B%9C%ED%96%89%EB%A0%B9,%20%EB%B3%84%ED%91%9C1), 검색일자: 2025. 6. 25.

독일 법인세법, https://www.gesetze-im-internet.de/kstg_1977/__5.html, 검색일자: 2025. 7. 3.

독일 협동조합에 관한 법, https://www.gesetze-im-internet.de/geng/inhalts_bersicht.html, 검색일자: 2025. 7. 3.

스페인 국세청, <https://sede.agenciatributaria.gob.es/Sede/ayuda/manuales-videos-folletos/manuales-practicos/manual-sociedades-2023/capitulo-11-regimen-fiscal-cooperativas/clases-cooperativas/cooperativas-fiscalmente-protegidas.html>, 검색일자: 2025. 7. 3.

스페인 협동조합의 조세제도에 관한 법률, <https://www.boe.es/eli/es/l/1990/12/19/20>, 검색일자: 2025. 7. 3.

영국 법인세무매뉴얼,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ompany-taxation-manual>, 검색일자: 2025. 7. 3.

일본 法令檢索, https://laws.e-gov.go.jp/law/340AC000000034/#Mp-Pa_2-Ch_1-Se_2-Ss_1-At_66, 검색일자: 2025. 7. 3.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7)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음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TEL:044-215-2114(代), www.moef.go.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044-414-2114(代), www.kipf.re.kr